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 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





## 문학석사학위논문

# 영조대 義禁府都事의 직제와 구성

2021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한 바 다

# 영조대 義禁府都事의 직제와 구성

지도교수 오 수 창

이 논문을 문학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 사 학 과 한 바 다

한바다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21년 8월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 【국문초록】

## 영조대 義禁府都事의 직제와 구성

한 바 다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본 논문은 義禁府都事職과 관련하여 영조대 직제 변화가 나타나게 된 원인, 영조대 전후의 변화, 의금부도사의 역할, 실제 임명 사례를 분석함 으로써 영조대 의금부도사의 변화상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의금부도사는 의금부의 실무진으로서 의금부 내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蔭官이 수령직에 제수받기 위해서 거쳐야하는 관직 중 하나였다. 의금부도사는 추국 과정에서 죄인의 심문 및 압송 등을 담당하며죄인 판결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특히 영조대에는 《經國大典》에 규정되어 있는 經歷(종4품)을 혁파하여 그 인원을 도사라는 관직으로 일원화하였다. 영조대는 명칭의 일원화에 더해 품계의 변화도 있었다.

영조대 의금부도사의 직제개편은 영조 6년 발생한 사건에 의해 촉발되었다. 영조 4년 戊申亂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영조 6년 4월 14일 환관 최필웅이 궁궐 담장을 넘어 방화 사건을 계획하였으나 시찰 중에 적발됨으로써 계획이 무산되었다. 최필웅과 관련 가담자들에 대한 경술 국옥이 진행되었으나, 최필웅과 함께 궁궐 방화 사건을 모의한 남인 '박장운'이 사건 조사 중에 음독자살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는 사건의 배후를 철저하게 조사하려던 국왕과 의금부의 의도를 저해하려는 행동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의금부도사 직제 개편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續大典》(1746)에서 경력을 혁파하고, 종6품의 참상도사 5원, 종9품의 참하도사 5원으로 체제를 정비하였다. 의금부도사 체제 정비를 위해서 참하도사에 생원, 진사 중 명망과 세도가 있는 자제를 가려서 차출해야 한다고 보았다. 참상도사 5원 중 1원에는 무관을 차출하도록 하였는데, 이렇게 변화된 직제는 1750년 이후 계속 유지되었다.

영조대 참하도사는 영조 6년 직제 개편 논의 이전부터 전원 사마 이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참상도사는 대략 30%에 해당하는 인물들이 사마이력을 가지고 있었다. 참상도사 중 전력이 참하도사인 참상도사는 사마시이력을 가지고 있었다. 영조대 의금부도사의 이후 관로를 분석한 결과수령직에 해당하는 관직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의금부도 사직이 음관이 수령직에 제수받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관서 중 하나였으므로 이후 관로에서 수령직의 비중이 높았던 것이다.

의금부도사 체제 정비의 의도는 크게 2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의도는 의금부 내부 시스템 정비에 있었다. 두 번째로는 의금부가 처리하는 주요 업무가 반역사건의 재판이었으므로 그 실무를 담당하는 의금부도사의 직제 개편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반란 사건을 엄중히처리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려는 국왕의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실제 죄인의 형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죄인의 심문을 거치고 형신이 이루어진 후 조율 과정을 거치도록 하였으나, 영조대는 조율을 거치지 않고바로 형을 확정하는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영조 초반 반란 세력을 진압하고자 하는 영조의 의도 때문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영조, 의금부도사, 경력, 경술국옥, 추국, 수령직

학 번: 2018-20779

## 목 차

머리말	1
<ul><li> 직제 변화 ···································</li></ul>	
1. 영조대 이전의 직제	
그. 주요 기능	23
1. 추국 및 의금부 내부 업무	23
2. 兵權 업무	31
三. 실제 임명 사례	35
1. 初入仕職과 과거이력	35
2. 관로 분석	41
맺음말	50
참고문헌	53
Abstract ······	71

## 표 목 차

[표 1] 현전하는 영조대 《금오계첩》의 의금부도사 인원	4
[표 2] 영조 6년 이전 의금부도사 관원 규정 변화	10
[표 3] 영조 6년 이후 의금부도사 관원 규정 변화	18
[표 4] 《금오계첩》의 의금부도사 구성	20
[표 5] 영조대 《금오계첩》의 의금부도사 무관	22
[표 6] 《금오헌록》 본문 金吾廳憲의 구성	24
[표 7] 영조대 의금부도사 추국 관련 업무와 차출 순서 …	27
[표 8] 영조대 의금부도사 기초 업무와 차출 순서	28
[표 9] 영조대 의금부도사 의금부 내부 업무 분장	30
[표 10] 영조대 《금오계첩》에서 확인되는 참상도사 초입	
사직	36
[표 11] 영조대 《금오계첩》에서 확인되는 참하도사 초입	
사직	36
[표 12] 영조대 참상도사 중 사마시 출신	37
[표 13] 영조대 의금부도사 이후 관로 수령직 분포	41
[표 14] 초입사직이 참하도사인 인물 관로	46
[부표 1] 영조대 《금오계첩》의금부도사 명단	60

## 머리말

의금부는 형조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독립되어 왕명에 의해 운영되는 사법기관으로서, 왕실과 국가에 가장 큰 위협인 역모죄, 유교 국가인 조 선의 이념을 흔들 수 있는 綱常犯罪를 다루며 왕실을 수사할 수 있는 특 수한 기관이었다. 그러한 업무의 중요성으로 인해서 의금부는 형조, 사헌 부, 한성부 등 조선시대 사법기관 중에서 위상이 가장 높은 종1품 아문 이었다.

유무죄를 판결하고 형량을 결정하는 주체는 왕 또는 당상관 등 고위 관리였지만, 판결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죄인 조사 및 압송, 나졸 관리 등 義禁府都事의 업무 수행이 필수적이었다. 그러므로 당하관인 의금부도사의 실무 처리 능력이 중요하였으며, 의금부 조직 내 의 공정하고 신속한 사법행정 절차 마련과 체계적인 내부 관리가 필요하 였다.

의금부에 대한 가장 이른 연구는 의금부의 성립과정과 구성, 기능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한 논문이었다.1) 그 후 조선시대 의금부에서 수행한 推鞫에 주안점을 두어 추국의 절차와 운영에 대한 연구 성과가 제출되었다.2)

의금부도사와 관련하여서 크게 두 가지 연구 성과가 있다. 하나는 의금부의 구성과 임무를 다루면서 인적 구성도 함께 분석하였다. 조선 전시기에 걸친 의금부도사의 구성과 임무를 다루었는데, 의금부도사의 구성과 역할 뿐만 아니라 의금부 연혁과 직제를 포괄적으로 분석했다.3)

<sup>1)</sup> 이상식, 1975 〈義禁府考〉, 《법사학연구》 4.

<sup>2)</sup> 김우철, 2010 〈조선후기 推鞫 운영 및 結案의 변화〉, 《민족문화》35; 김진옥, 2010 〈'禁推'의 성격과 특징〉, 《민족문화》36; 이하경, 2018a 〈추국장에서 만난 조선후기 국가: 영조와 정조 시대 《추안급국안(推案及鞫案)》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하경, 2018b 〈조선후기 추국장의 정치적 의미-영조 13년(1737) 김성탁 사건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50.

<sup>3)</sup> 오갑균, 1995 《조선시대 사법제도연구》, 삼영사.

다른 하나는 의금부의 조직과 추국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면서 인적 구성도 함께 분석하였다.4) 이렇듯 의금부와 의금부도사에 대한 선행 연구는 의금부의 성립과정과 구조를 규명하는 데 집중되었다.

선행 연구에서 전체 의금부 구조 속에서 의금부도사에 대해서 고찰했으나, 추국을 주관하는 구성원, 그중에서 의금부 실무진인 의금부도사를 독립 주제로 다른 연구 성과는 없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영조 6년 의금부도사의 직제 개편에 대해 그 결과를 서술하였으나, 그 직제 변화가 나타나게 된 배경인 영조 6년 庚戌鞫獄 처리 과정에 대한 설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앞선 연구들은 전 시기를 분석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영조대 변화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하였으며, 직제 변화가 나타난 이후 의금부도사의 실제운영이 어떠하였는지, 의금부도사는 어떠한특징을 가지고 있는 관직이었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하지는 않았다.

의금부도사는 의금부의 실무진으로서 의금부 내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蔭官이 수령직에 제수받기 위해서 거쳐야하는 관직 중 하나였다. 의금부도사는 추국 과정에서 죄인의 심문 및 압송 등을 담당하며죄인 판결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특히 영조대에는 《經國大典》에 규정되어 있는 經歷(종4품)을 혁파하여 그 인원을 도사라는 관직으로 일원화하였다. 명칭의 일원화에 더해 품계의 변화도 있었다. 이러한 변화를 겪은 의금부 조직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부의 구성원, 특히 의금부 실무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고에서는 영조대 의금부도사의 직제 변화가 나타나게 된 원인, 영조대 전후의 변화, 의금부도사 관직의 실제 운영 사례를 분석하였다. 의금부도사에 초점을 맞춘 면밀한 분석을 통해 당대 의금부 전반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본 논문에서 활용된 주요자료는 다음과 같다. 먼저 영조대 의금부도사의 법제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經國大典》, 《典錄通考》, 《續大

<sup>4)</sup> 김영석, 2013 〈의금부의 조직과 추국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 문.

典》,《大典會通》 등의 법전과 《承政院日記》,《朝鮮王朝實錄》과 같은 연대기를 검토하였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자료는 《金吾契帖》이다. 본고에서는 영조대 의금부도사의 명단인 여러 《금오계첩》의 금오좌목 명단을 활용하였다. 《금오계첩》은 신임 의금부도사가 免新하는 날에 선임 의금부도사 9명을 위해서 만든 계첩자료이다. 《금오계첩》 좌목에는 작성 당시 의금부도사의 품계, 관직명, 이름, 자와 출생년도, 과거급제사항, 본관, 제작연대가 기록되어 있다.

영조대 현전하는 《금오계첩》(1729, 1731, 1733, 1734, 1739, 1745, 1748, 1749, 1750, 1753, 1755, 1756, 1759, 1762, 1769년분)은 22점이다. 1729년 《金吾僚員錄》에 는 총 22명이 기록되어 있다. 이는 작성연월이 1729년 정월~8월까지이므로 영조대 다른 《금오계첩》 좌목에 비해서 의금부도사 명단이 더 많이 기재되었다. 1734년 甲寅正月 日에 작성된 《금오계첩》2점은 각각 대전시립박물관과 서울역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의금부도사 명단이 동일하다. 동일한 《금오계첩》을 제외하면 총 21점의 의금부도사 명단이 분석 대상이다. 21점의 《금오계첩》에 기록된 의금부도사는 총 222명으로, 중복된 인물을 제외하고 본고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인원은 169명이다.

영조대 《금오계첩》은 국립중앙도서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 경기도박물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그에 대한 종합적인 목록은 2019년 공평도시유적전시관 특별기획전 '의금부 금오계첩-이름과 그림으로 남긴 만남의 기록'전시도록에 있는 《금오계첩》을 토대로 작성하였다.5) 영조대 《금오계첩》의 종류와 의

<sup>5)</sup> 공평도시유적전시관 기획전 '의금부 금오계첩-이름과 그림으로 남긴 만남의 기록'(2019. 10.18~2020.2. 23)의 전시도록을 참고하였다. 전시도록의 〈전시를 열며〉부분에 서울역사박물관장 송인호는 공평도시유적전시관은 조선시대한성부(漢城府) 견평방(堅平坊)에서 출토된 16세기 도시유적을 원래 위치에 전면적으로 보존하여 조성한 도시 박물관으로서, 개관 1주년을 맞이하면서 첫 기획전으로 '의금부 금오계첩'을 개최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공평도시유적전시관, 2019 《(의금부)금오계첩: 공평도시유적전시관 특별기획전》, 서울

금부도사 수록 인원은 [표 1]과 같다.

[표 1] 현전하는 영조대 《금오계첩》의 의금부도사 인원

년도	금오계첩명	작성 시기	금부도 사 수	금부도 사 중 음관 <sup>6)</sup> 수	文·武 ·기타	소장처
1729	義禁府圖	自己酉正 月至八月	22	20	武 2	일암컬렉션
1729	錦衣郎契帖	己酉九月 日		10	-	서울역사박물관
1731	金吾契帖	辛亥十一月		10	_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 원
1733	金吾契帖	癸丑九月 日		10	_	서울역사박물관
1733	金吾契帖	癸丑十二 月 日		10	_	국립중앙박물관
1734	金吾契帖	甲寅正月日	10	10	_	대전회덕 은진송씨 동춘당 후손가 (대전시립박물관 제공)
	金吾契帖	甲寅正月 日		10	_	서울역사박물관
	金吾契帖	甲寅七月日		10	_	군산 동국사

역사박물관, 6쪽); 의금부 본부의 위치가 한성부 중부 견평방에 위치해 있었으므로, 공평도시유적전시관의 위치에 있었던 의금부에 대한 기획전을 준비했던 것으로 보인다. 전시 도록 부록에 시대별 《금오계첩》을 실었으며,  $1606년\sim1887년까지$  《금오계첩》 자료가 소개되어 있다. 이중에서 필자는 영조대 《금오계첩》을 사용한 바, 영조 재위 기간에 해당하는 《금오계첩》 자료인  $1729년\sim1769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공평도시유적전시관, 2019 앞의책,  $100\sim109$ 쪽)

	ム五中	己未正月	10		고려대학교
1739	金吾帖	П	10	_	박물관
1703	   金吾契帖	己未五月	9	文 1	하버드대학교
		日			옌칭도서관
					미국
					버클리대학교
1745	   金吾契帖	己丑三月	10	_	동아시아도서관
		В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
	A 7 40 40 A				터 제공)
1748	金吾郎契會	_	10	_	가톨릭관동대학교
	国	377B			박물관
1749	金吾契帖	己丑五月日	10	_	수원화성박물관
		庚午四月			서울대학교
1750	金吾座目		9	武 1	규장각한국학연구
		H			원
1753	金吾契帖	癸酉八月 日	9	武 1	서울역사박물관
1755	金吾契帖	乙亥十月	9	武 1	고려대학교
1733	<b>立 古 笑 帕</b>	В	9	IE( I	중앙도서관
1756	金吾契帖	丙子八月 日	9	武 1	충현박물관
	金吾契帖	己卯七月	9	武 1	서울역사박물관
1750	落帙	В			
1759	金吾座目	己卯十二	0	<del>≓</del> } 1	그리즈이트 지코
	并 英宗己卯	月日	9	武 1	국립중앙도서관
	光示しが				서울대학교
1762	金吾契帖	壬午十一	9	武 1	
1102		月日		J 11/1	원
	A T	己丑九月	6	<b>→</b> 5 →	
	金吾座目	日	9	武 1	국립중앙도서관
1769		乙丑十月			단국대학교
	金吾契帖		9	武 1	율곡기념도서관
		H			

의금부 내부 운영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영조대 참하도사를 지낸 박명양(朴鳴陽)7이 작성한 의금부 내부규정집인 《金吾憲錄》을 분석하였다. 조선시대 의금부는 형조의 추관지, 호조의 탁지지, 예조의 춘관지와 같은 관서지가 남아 있지 않은데, 《금오현록》은 의금부의 직제, 업무 등 의금부 내부 체제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의금부도사는 추국에 참여하여 죄인의 심문과 문서를 작성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영조 6년 직제개편의 중요한 계기가 된 최필웅의 궁궐 방화 모의 사건의 처리 과정인 경술국옥을 이해하기 위해서 죄인심문기록인《推案及鞫案》<sup>8)</sup>을 중심으로 활용 하였다.

<sup>6)</sup> 음관이란 넓은 의미에서 문과, 무과에 급제하지 않고서 벼슬하는 사람을 지 칭하며, 좁은 의미로는 蔭路를 통해서 벼슬하는 사람을 지칭하였다. 즉 조상 의 덕으로 벼슬 하는 사람들인 '門蔭', '功臣'과, 천거를 통해서 출사한 사람들 을 지칭하는 개념이 음관이었다. (임민혁, 2002 《조선시대 음관연구》, 한성 대학교출판부.)

<sup>7)</sup> 박명양은 영조 때 활동했던 문신으로, 자는 鳳兮이고 본관은 咸陽이다. 박명 양의 부친은 통덕랑(通德郞) 박순규(朴舜揆)이다. 그는 영조 14년(1738) 식년 시에 합격하였으며, 영조 19년(1743) 11월 5일 참하도사로 임명되었으며, 영 조 21년(1745)에도 참하도사로 근무하였다. 그러나 박명양은 영조 21년(1745) 4월 공홍수사(公洪水使) 윤광신(尹光莘)을 拿捕하지 못하였다. 이 일에 대한 책임으로 平安道 安州牧에 유배되었으나, 같은 해에 영의정 김재로(金在魯)는 "박명양은 금부도사로 있었을 때의 일 때문에 아직까지 정배(定配)되어 있는 데, 또 집에는 80세 된 노친(老親)이 있습니다."라고 하였으며 이후 박명양은 석방되었다. 박명양이 처음으로 참하도사로 재직한 영조 19년(1743) 11월부터 유배가기 이전인 1745년 중순까지 근무하였으므로 박명양이 참하도사로 근무 한 기간은 대략 1년 반 정도라고 할 수 있다. 박명양은 김재로의 건의로 석 방되어서 관직을 제수받았으나 영조 40년(1764) 양천현감으로 재직 중에 금 주령을 어겨 귀양 가게 되었다. (《승정원일기》 965책, 영조 19년 11월 5일 갑신; 《영조실록》 권61, 영조 21년 4월 21일 계해; 《영조실록》 권62, 영 조 21년 12월 21일 무오; 《영조실록》 권103, 영조 40년 5월 3일 갑인; 《승 정원일기》 995책, 영조 21년 12월 25일 임술.)

<sup>8) 《</sup>추안급국안》은 선조 34년(1601)~고종 29년(1892)까지 판결 받은 죄인의 심문내용과 형신, 결안 내용이 작성되어 있다. 《추안급국안》은 1983년 亞細

본고에서 사용하는 義禁府郞廳(=義禁府都事), 경력 등의 관직명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郞廳'은 조선시대에 각 관아의 정3품 통훈대부 이하의 당하관을 통틀어 지칭하는 말로, 郞官이라고도 하였다. 의금부낭청은 《경국대전》에서 경력과 도사로 구분하였으나, 영조대 경력을 혁파하고 도사로 명칭을 일원화했으며 품계의 변화가 있었으므로 통칭하여 義禁府都事 또는 義禁府의 郞官이라고 한다.9)

본고에서 중심 자료로 활용한 《금오헌록》(영조 20)에서 '경력'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다. 《금오헌록》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력은 《경국대전》에 규정된 종4품이 아닌 참상도사(종6품)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금오헌록》에서 경력을 참상이라고 지칭하였는데, 이후 《속대전》(1746)에서 경력의 혁파를 이루고 도사로 명칭이 일원화되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경력'이라는 용어는 계속 사용되었다. 순조대 《금오계첩》에서도 참상도사를 '上經歷'이라 구분하였으며, 정조대에도 상경력이라는 명칭이 사용된 기사를 찾을 수 있다.10) 그러므로 영조대 경력 혁파(1746년)이후에도 《금오헌록》이 작성된 때와 같이 《경국대전》에 규정된 종4품의 '경력'이 지칭하는 의미가 아니라 참상도사와 참하도사 구분에서 참상도사의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고에서는 영조대 경력 혁파 이전과 이후로 구분 짓지 않고 경력의 용어를 사용하였다.

亞文化史에서 30책으로 영인, 간행하였다. 한편 전주대학교 변주승 교수가 연구책임자로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총 10명이 번역에 참여하여서, 《추안급국안》의 역주사업이 진행되었으며, 2014년 《추안급국안》 번역서를 출판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영조 6년 庚戌逆獄推案 내용이 실려 있는 17, 18책 내용을 참고하였으며, 17, 18책의 번역자는 조윤선이다. 본고에서는 《추안급국안》 조윤선의 번역문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필자가 부분적으로 고친 것이다.

<sup>9)</sup> 김진옥 역주, 2016 《의금부의 청헌(廳憲), 금오헌록》, 보고사, 47쪽(각주 64 참조); 오갑균, 1995 앞의 책, 24쪽.

<sup>10) 《</sup>승정원일기》 1416책, 정조 2년 3월 29일 기축; 《승정원일기》 1628책 정조 11년 6월 17일 계축; 《승정원일기》 1698책, 정조 16년 1월 6일 병자; 《승정원일기》 1744책, 정조 19년 5월 25일 을해.

## 一. 직제 변화

### 1. 영조대 이전의 직제

의금부의 전신은 고려 말에 설치되었던 巡馬所이며, 조선 초기에는 義勇巡禁司 등으로 변천되었다.11) 의금부의 전신인 의용순금사는 고려 말의 순마소의 역할을 이어받아 순찰의 업무와 군사적 기능을 수행하였다. 태종 14년 의금부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으며12) 왕명을 받들어 推鞫하는 업무와 사·서인의 고소·고발 등에 대한 일을 관장하였다.13) 의금부는 국왕 직속기관으로서 국왕의 명령에 따라 추국이 진행되었으므로, 의금부에서 처리하는 옥사를 詔獄이라고도 칭하였다. 의금부로 명칭이 개칭되고 의금부는 구금과 재판 관련 업무인 사법의 임무를 주로 담당하게 되었다.14) 즉, 의금부로 명칭을 고친 이후 의금부는 兵權과 관련된 일 중에서는 임금이 거둥할 때 내외의 禁濫處에 郎官이 조례를 거느리고 가서불상사를 살피는 정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없앴으며, 王獄으로서 죄수를 처결하는 일을 전담하였다.15) 태종 14년 이후 유지되던 의금부는 고종 31년에 義禁司로 개편되었다.16)

의금부를 구성하는 관원은 다음과 같다. 《경국대전》에 의금부 구성

<sup>11) 《</sup>태종실록》 권5, 태종 3년 6월 29일 을해.

<sup>12) 《</sup>태종실록》 권28, 태종 14년 8월 21일 신유.

<sup>13) 《</sup>金吾憲錄》 〈設立〉 조 1. 掌奉教推鞫及士·庶申訴、告牒等事.

<sup>14)</sup> 이상식, 1975 앞의 책; 김형중, 2014 〈조선초기의 순군만호부(巡軍萬戶府) 의 조직과 기능에 관한 연구〉, 《역사와 경계》 90.

<sup>15)</sup> 의금부의 연혁, 직제 등에 관한 내용은 《金吾憲錄》이외에도 여러 文集이나 類書에 기술되어 있다. 허균(1569~1618)의 시문집인 《惺所覆瓿稿》, 영·정조 시기의 학자인 이궁익(1736~1806)이 편찬한 野史 《燃藜室記述》에서도 의금부 연혁이 기록되어 있다. (《惺所覆瓿稿》 권22;《燃藜室記述》 별집 권6, 〈官職典故〉. 國初仍麗制,置巡軍萬戶府,太宗二年改爲巡衛府,三年又改爲義勇巡禁司,十四年改稱義禁府,置都提調、提調、鎭撫、知事、都事,自是罷兵柄,掌奉教,推鞫之事. 大駕行幸,禁濫雜. 郎官率阜隸, 詗察非常.)

<sup>16) 《</sup>고종실록》 권32, 고종 31년 7월 24일 무술.

원은 4員17)의 당상관과 10員의 당하관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4명의 당상 관은 겸직자였으며, 당하관은 종4품의 經歷과 종5품의 都事이다.18) 《경국대전》에서는 당하관인 종4품 경력과 종5품 도사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인원을 정하지 않고 총합이 10원이라고만 규정했다.

《경국대전》에 규정되어 있는 당하관인 종4품의 경력과 종5품의 도사의 직제는 이후 변화가 거듭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조선후기 인조대 이후 두드러졌다. 인조 11년(1633) 이조에서 의금부도사의 관제개편 논의가 있었는데, 《경국대전》 내 의금부의 경력과 도사의 품계가 각각 4품과 5품인데 근래에 모두 참하관을 차출하는 것은 법전의 본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경국대전》 본의에 맞게 참상관 중에서 차출하기를 바라고있었다. 이에 인조는 의금부도사는 참하관을 임명하지 말라고 하였다.19)

《경국대전》에는 도사가 종5품으로서 참상관이었는데, 인조 11년 논의가 있기 이전에 이미 종5품의 도사는 물론이고 종4품의 경력도 참하관이 임명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다.20)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조는 《경국대전》에 규정되어 있는 의금부도사의 직제를 따르도록 하였다. 그러나 인조 25년에 이르러 녹봉 지급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의금부도사를 모두 참하관으로 차출하도록 하였다.21)

현종 3년(1662)에는 의금부도사가 참하관인 경우에는 30개월 근무 기간을 채우면 6품으로 승진하도록 규정하였다.<sup>22)</sup> 의금부도사는 본래 참상관 차출이었지만, 인조대부터 참하관을 의금부도사로 차출하는 상황 속에서 이 규정이 나타났다. 명확하게 의금부도사의 품계 변화가 나타난시점에 대해서 규정하기는 어려우나, 인조대~현종대에 이미 의금부도사

<sup>17)</sup> 본고에서는 의금부 당상관과 의금부도사를 세는 단위로 '員'을 사용하였다.

<sup>18) 《</sup>經國大典》 吏典 〈京官職〉 圣 從一品衙門 義禁府. 掌奉教推鞫之事. 堂上官四員, 以他官棄. 堂下官十員. 從一品 判事 正二品 知事 從二品 同知事 從四品 經歷 從五品 都事.

<sup>19) 《</sup>인조실록》 권28, 인조 11년 7월 12일 임인.

<sup>20)</sup> 김영석, 2013 앞의 논문, 79쪽.

<sup>21) 《</sup>인조실록》 권28, 인조 25년 4월 3일 갑술.

<sup>22) 《</sup>典錄通考》 吏典 〈京官職〉圣; 《受教輯錄》 吏典 〈京官職〉圣. 義禁府都事參下,則仕滿三十朔, 直出六品. 康熙壬寅承傳.

에 참하관이 임명되고 있었던 것이다.

[표 2] 영조 6년 이전 의금부도사 관원 규정 변화

시기	내용	낭청 구성
《경국대전》(1485)	堂下官十員	경력: 종4품 도사: 종5품
숙종 12년(1686)	義禁府都事一員 以武窠定式差出	무관 1과 설치
숙종 29년(1703) <sup>23)</sup>	義禁府都事參下五員, 三員陞經歷	경력: 8원 도사: 2원
《전록통고》(1707) 이전 〈제수(除授)〉조	戶刑工郎官各一員·司宰 監僉正· <u>義禁府都事一員,</u> <u>以武窠差出.</u>	의금부도사 중 1원은 무관

숙종 12년(1686) 의금부도사 중 무과 1과를 설치하였다.<sup>24)</sup> 위의 [표 2] 와 같이 《전록통고》(1707)에서도 의금부도사 1원은 무관으로 차출할 것 을 규정하였다.<sup>25)</sup>

숙종 22년(1696) 최석정은 관제 개편을 논하면서 참상관이 녹을 잃게될 정도로 참상관의 적체가 심하므로 참상관의 수를 늘리고 참하관의 수를 줄이는 방향을 제시하였다.<sup>26)</sup> 숙종 29년(1703)에는 참상관의 자리가

<sup>23) 《</sup>숙종실록》 권38, 숙종 29년 7월 11일. ···遂略改官制, 義禁府都事參下五員, 三員陞經歷···.

<sup>24) 《</sup>승정원일기》 316책, 숙종 12년 6월 3일 을묘. 金載顯, 以吏曹言啓曰, "曾以筵臣所達, 蔭窠中增出武窠, 以爲武弁調用之路, 廟堂與吏曹相議, 定式擧行事, 命下矣. 缺臣則以爲, <u>戶曹·工曹郎官中各一員</u>, 司宰監<u>愈正·義禁府都事一員, 以武窠定式差出</u>, 宜當云. 依此擧行之意, 敢啓." <u>答曰,"知道."</u>; 《受教輯錄》 吏典 〈除授〉丞. 戶·刑·工郎官各一員, 司宰監愈正, 義禁府都事一員, 以武窠差出. 康熙丙寅承傳.

<sup>25) 《</sup>典錄通考》 吏典 〈除授〉조. 戶刑工郞官各一員·司宰監僉正·<u>義禁府都事一</u>員,以武窠差出. 康熙丙寅承傳.

<sup>26) 《</sup>숙종실록》 권30, 숙종 22년 7월 21일 을해.

부족한 상황 속에서 참하관 자리를 줄이고 참상관 자리를 늘리게 되었다. 이러한 관제 개편에 의해 의금부도사 참하관 5원 중 3원은 경력으로올렸다.27) 《경국대전》에 의금부도사 인원에 대해서 규정하지는 않았으나, 《경국대전》편찬 이후 임명기사와 《금오계첩》을 살펴보면 인조대이후로 경력 5원, 도사 5원으로 구성되었다. 이후 숙종 29년(1703) 관제개편으로 도사 5원 중 3원이 경력으로 올라가면서 총 8원이 경력, 2원이도사가 되는 변화가 생겼던 것이다. 이러한 직제는 계속 유지되다가, 영조 6년의 변화를 맞게 되었다.

### 2. 영조 6년 논의 및 이후 변화

영조 6년(1730) 의금부도사 직제개편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치적 사건은 영조 6년(庚戌年) 謀叛 사건이다. 그 사건의 처리가 경술국옥이다. 영조대 의금부도사의 직제 개편은 경술국옥 처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속에서 이루어졌다. 경술국옥의 전개 과정, 관련자 처벌에 대한 기록을 참고하여 영조 6년 의금부도사 직제 개편의원인과 직제 개편을 단행한 영조의 의도를 살펴볼 것이다.

영조 6년 큰 사건이 두 개 발생하였다. 하나는 궁궐에 뼈 가루를 들여와 일부를 땅에 묻고 일부를 세자, 옹주에게 먹인 사건이며, 다른 하나는 19살이었던 환관 최필웅(崔必雄)이 한밤중에 궁궐에 방화하려고 궁궐 담장을 넘었는데 譏察 중에 체포된 사건이다.

영조 6년 4월 15일 최필웅의 궁궐 방화 기도 사건의 국옥이 있기 이전에 궁궐에 뼈 가루를 들여와 이를 세자, 옹주에게 먹인 사건의 국옥이이미 진행되고 있었다. 궁궐에 뼈가루를 묻고 세자, 옹주에게 먹인 사건의 가담자는 영조 4년 戊申亂<sup>28)</sup>의 중심 인물 중 한명이었던 前전라감사

<sup>27) 《</sup>숙종실록》 권38, 숙종 29년 7월 11일 을묘.

<sup>28)</sup> 영조 4년 발생한 戊申亂은 이인좌를 필두로 하여서 관직을 가지지 못해 한을 품었던 소론, 남인 측 인물만이 아니라 중앙에서 병권을 쥐고 있었던 김

정사효, 정사효의 서얼동생 정사공, 정사효의 아들 정도륭과 정사효의 전 군관 박도창, 상궁 박순정, 김순혜 등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환관 최 필웅이 4월 14일 밤에 체포되는 사건이 또 발생한 것이다.<sup>29)</sup>

영조는 환관 최필웅이 시찰 중에 체포되는 사건을 단순한 사건으로 보지 않았다. 최필웅이 붙잡힌 바로 다음날인 4월 15일 영조는 최필웅이물건을 훔치려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며, 친국한다고 전교하였다.30) 경종 때 환관 박상검, 문유도 등이 소론의 김일경과 결탁하여영조를 죽이려 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영조는 그 배후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명하였다.31)

환관 최필웅은 궁궐 방화 계획을 혼자 세운 것이 아니라 양반과 결탁하여서 꾸민 일이었다. 최필웅은 남인 박재창과 결탁하였으며, 박재창의 아버지이자 무신난의 중심인물 중 한명이었던 前전라감사 정사효와 친분을 맺고 있었던 박장운도 사건의 배후로 관여하였다.32)

한편 궁궐 방화 기도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장운이 나졸이 넣은 독약을 마시고 徑斃하는 일이 발생하였다.33) 한성부에서 박장운을 검시하였

중기, 수원 수령으로 임명된 남태징, 평안병사 이사성, 전라감사 정사효 등고위 관직을 가진 인물들이 이 사건의 핵심인물이었고, 최종 목표는 소현세자의 증손인 밀풍군 탄을 왕으로 추대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무신난은 영남, 호남, 충청, 평안 등 전국적인 규모의 반란이었다. (조윤선, 2007 앞의 논문, 194~195쪽.)

<sup>29) 《</sup>추안급국안》 권17, 庚戌逆獄推案 第三卷, 259쪽.

<sup>30) 《</sup>추안급국안》 권17, 庚戌逆獄推案 第三卷, 259쪽; 무신난을 겪으며 정통성에 대한 위협을 느낀 영조가 추국에 직접 개입하면서 추국의 절차(심문-진술-刑訊-재심문-結案-照律-처형) 중 照律의 절차가 생략되기도 하고 자백을 근거로 작성된 結案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김우철, 2010 앞의 논문, 223~226쪽.)

<sup>31)</sup> 조윤선, 2007 앞의 논문, 214쪽.

<sup>32) 《</sup>영조실록》 권25, 영조 6년 4월 19일 병진.

<sup>33) 《</sup>영조실록》 권25, 영조 6년 4월 21일 무오. 영조 6년 궁궐 방화 기도 사건의 가담자인 박장운 뿐만 아니라, 앞서 궁궐에 뼈 가루를 묻고 세자, 옹주에게 먹이는데 앞장 선 무신난의 핵심인물인 정사효의 서얼동생 정사공 또한음독자살하였다.

는데 박장운 곡도에 은비녀를 꽂았더니 색이 검게 변하였다. 이에 영조는 한성부 낭청을 시켜 은비녀를 영조와 대신들에게 보여주도록 하였다.34)

검게 변한 은비녀를 통해 박장운의 음독자살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광좌는 죄인이 미처 조사 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독약을 마시고 죽어서 정황을 캐내어 국법을 펴지 못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 개탄하였다.35) 이태좌도 그러한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36)

이광좌 이태좌 이외에도 김취로는 이와 같은 상황을 국가와 승부를 내려는 상황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았으며37) 영조 또한 국가와 겨루려는 자들이라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보았다.38) 사건의 배후를 명료하게 밝혀야 하는 기관인 의금부에서 의금부 나졸들과 모반을 주도하는 세력이 결탁하는 일이 벌어지고, 죄인이 독약을 먹고 죽은 사건은 의금부내부 체제 정비의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영조는 옛말에 의금부는 형조와달리 조금 깨끗하다고 하였는데 어찌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지에대해서 대신들과 논의를 진행하였다.39)

이태좌가 아뢰기를, "주서 윤경룡(尹敬龍)의 말을 들으니, '의금부에 참하관이 없어진 뒤로 모양새를 갖추지 못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이나졸이 국법은 안중에도 없이 뇌물을 받고 독약을 써서 막중한 국옥 죄수로하여금 연속해서 지레 죽게 한 것은 참으로 너무도 절통한데, 실로 유래한

<sup>34) 《</sup>승정원일기》 705책, 영조 6년 4월 22일 경신. 申致雲曰, "長運初檢時, 揷銀釵於穀道, 則色變, 今方再檢云矣." 上曰, "言于大臣, 可也." 漢城府郞廳, 持銀釵而來. 上曰, "漢府郞廳親持銀釵, 示于大臣, 詳言檢尸狀, 可也."

<sup>35) 《</sup>승정원일기》 705책, 영조 6년 4월 22일 경신. 李光佐曰, "豈有如許警心者乎? 罪人未及究問, 徑先飲毒致斃, 使情節未覈, 國法未伸, 良可痛惋."

<sup>36) 《</sup>증정원일기》 705책, 영조 6년 4월 22일 경신. 台佐曰, "自古逆賊, 雖或有之, 締結內人, 敢爲行兇之計者, 未有如今日. 且置毒於罪人, 使之徑斃, 至不得究問, 臣之深慮, 無所不至矣."

<sup>37) 《</sup>승정원일기》 705책, 영조 6년 4월 22일 경신. 取魯曰, "必欲與國家角勝, 極甚憂懼矣."

<sup>38) 《</sup>승정원일기》 705책, 영조 6년 4월 22일 경신. 上曰, "有若與國家相較者然也."

<sup>39) 《</sup>승정원일기》 705책, 영조 6년 4월 22일 경신. 上曰, "舊言王府, 異於秋曹, 頗潔云, 而何其如是乎?"

바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의금부에 내려오는 옛 규례에는 권력이 참하(參下) 도사에게 있었는데, 관제(官制)를 변통한 뒤로 참하는 두 자리뿐이고 또한 천전하는 길이 되어, 대부분 가려 차임하지 않아서 잘 검칙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의금부의 하례들이 관령(官令)을 전보다 크게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폐해를 바로잡는 방도로는, 참하 도사 5원을 옛 제도에 의거해 초입사(初入仕)한 생원과 진사 가운데 위력이 있는 자를 차출한 뒤에야 쇄신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40)

이태좌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이유는 의금부의 참하관이 없어 진 뒤로 모양새가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와 같은 의금 부의 폐해를 바로 잡는 방법으로 참하도사 5원을 초입사한 생원, 진사 가운데 위력이 있는 자를 차출하는 것이 해결 방법이라고 보았다. 이광 좌 또한 참하도사의 수는 5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광좌가 아뢰기를, "의금부 당청은 본래 음관(蔭官)의 청선직(淸選職)으로, 전에는 참하 5원과 참상(參上) 5원을 반씩 나누어 가려 차출하였는데, 그중 참하는 생원과 진사 중 명망과 세도가 있는 재상의 자제를 가려서 차출하여 30개월이 차면 비로소 6품으로 올리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참하 5원이 곧 본부의 구임(久任) 주인이 되어 의금부 전체의 일을 전적으로 관리하여, 서리와 하례들이 모두 두려워하고 일마다 다 단속하여 정리되었습니다. …모든 일은 전혀 단속되지 않고 본부의 하속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 모양새를 갖추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옛 제도를 다시 회복하여참하 다섯 자리를 차출하지 않아서는 안되겠습니다.…"41)

<sup>40) 《</sup>令정원일기》 705책, 영조 6년 4월 22일 경신. 台佐曰, "聞注書尹敬龍之言, '禁府自無參下官之後, 不成貌樣云矣.' 今此羅卒之不有國法, 受賂行藥, 使莫重鞫 囚, 連續徑斃, 誠爲萬萬絶痛, 而實有所由然矣. 王府流來舊規, 權在參下都事, 而 官制變通之後, 參下只是兩窠, 亦爲遷轉之階, 多不擇差, 未能檢飭, 故府隸輩之 畏戢官令, 大不及於前云. 卽今矯弊之道, 參下都事五員, 依舊制以初入仕生進有 風力者差出. 然後庶可爲振刷之效矣."

이광좌는 의금부도사가 의금부 전체의 일을 전적으로 관리하는 자리인데, 참하도사의 인원이 적은 뒤로는 일이 단속되지 않으므로 참하도사를 5원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참하도사에 생원, 진사 중 명망과 세도가 있는 자제를 가려서 차출해야 한다고 본다.

심수현은 참하관 인원은 숫자가 많은 뒤에야 의금부 전체의 일을 주관하여 엄숙하게 바로잡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니, 변통하여 5원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42) 이집 또한 참하도사 인원은 5원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동의하였는데, 이집은 의금부의 폐해를 바로잡는 방법은 참하도사 인원을 5원으로 유지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였다.43)

그러나 홍치중은 이태좌, 이광좌, 심수현, 이집과는 다른 의견을 보였다. 홍치중은 참하도사를 변통하여 5원으로 한다면 천전(遷轉)할 때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했다. 그는 도사의 수가 2원일 때는 참하관이 30개월을 채운 뒤에 6품으로 올린다면 효과가 있지만, 변통하여 5원으로 한다면 천전할 때 곤란한 일이 없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44) 홍치중은 천전할 때 인원이 많아지면 적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홍치중 뿐만 아니라 이의현도 의금부 참하도사 인원을 5원으로 늘릴 때생기는 천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동의하였다. 이의현은 의금부도사 5자리를 모두 초사 자리로 만든다면 천전하는 방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수 있으므로 지난해에 변통한 예대로 2원을 초사 자리로 놓아두는 것이좋다고 보았다.45)

그러나 이광좌는 현재 상황에서는 천전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고

<sup>42) 《</sup>승정원일기》 705책, 영조 6년 4월 22일 경신. 沈壽賢曰"···故以參下都事, 決科爲宰相者亦多, 此乃爲官擇人之效, 五員不宜減數矣."

<sup>43) 《</sup>승정원일기》 705책, 영조 6년 4월 22일 경신. 李集曰, "金吾矯弊之道, 莫如參下都事之擇差久任, 今於參上參下各五員之中, 分半變通, 方可得力矣."

<sup>44) 《</sup>증정원일기》 705책, 영조 6년 4월 22일 경신. 致中曰, "都事二員, 只以參下差出, 滿三十朔後陞六, 則亦可得力, 若變通五員, 則參下遷轉之時, 不無掣肘之端矣."

<sup>45) 《</sup>승정원일기》 705책, 영조 6년 4월 22일 경신. 李宜顯曰, "禁都五窠, 若盡作初仕窠, 則必多妨礙於遷轉之道, 依向年變通之例, 以二員作初仕窠, 似乎可矣."

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반박하였다.

이광좌가 아뢰기를, "지금 참하는 적체된 근심이 없고, 도목(都目) 때마다복직(復職)하여 여러 자리가 났으니, 다섯 자리에 비록 다 참하를 차임하더라도 구차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근래 익위사(翊衛司)에 참하를 임명한 일이 없어서 30개월 자리가 매우 적습니다. 경화(京華)의 자제 중에 지망이 있는 자가 또한 맡게 되면, 의금부가 스스로 확 변하여 분명 엄숙하게 바로잡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46)

이광좌는 지금 참하관은 적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천전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며, 앞서 주장한 것처럼 경화의 자제 중에서 지망이 있는 자가 참하도사 자리를 맡게 된다면 의금부를 바로 잡을 수 있다고 보았다. 이렇듯 이광좌는 참하도사 인원 5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장하였다.

영조 6년 의금부도사 직제 개편 논의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영조 6년 의금부도사에 직제 개편은 관제 변화의 필요성에 의해 시작되었으나, 의금부 내 체제 정비를 위한 방향성에 대한 입장은 두 입장으로 나뉘게 되었다. 참상도사와 참하도사 5원씩으로 하도록 주장한 인물은 이광좌, 이태좌, 심수현, 이집이며, 이들은 참하도사의 인원이 많아야 의 금부 전체의 일을 주관하고, 의금부의 폐해를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주장 하였다.

반면에 숙종대 직제를 유지하기를 바랐던 홍치중과 이의현은 천전(遷轉) 문제를 제기하며 참하도사의 인원은 종래와 같이 2원으로 유지하기를 바랐다.

이에 이광좌는 최종결정에 가까운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의금부도사 5 원에서 3원은 참상관의 궐원에 따라 우선 참하관의 초입사로 차출하고, 2원은 참하관이 차례로 6품으로 올라가는 자리이니 仕日이 차기를 기다 리고, 그 후임 또한 초입사로 차출하도록 하였다.<sup>47)</sup>

상이 이르기를, "한번 6품의 자리가 많이 나온 뒤로 의금부 낭청이 화직 (華職)이 되었는데 근래 또 대부분 복직하여 연소한 사람은 매우 적고 노쇠한 사람은 또한 많으니, 옛 제도대로 참하관 5원을 궐원에 따라 보임하도록하라."<sup>48)</sup>

영조는 참하도사 인원을 5원으로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는 숙종대 이전의 직제대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영조는 근래에 노쇠한 사람들이 주로 의금부도사직을 맡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영조 6년(1730) 영조와 대신들의 논의 결과는《新補受教輯錄》과<sup>49)</sup> 영조 20년 작성된《금오헌록》에 기록되어 있다.

영조 20년(1744)에 작성된《금오헌록》 설립 규정에서 의금부도사 구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당청 10원 중에서 참상관을 경력이라고 칭하고, 참하관을 도사라고 칭한다. 예전에는 참상관과 참하관이 각 5원이었는데, 중간에 바뀌어 참상관 8원, 참하관 2원이었다. 임금이 경술국옥 당시에 "참상관은 순서가 되면 승진전보하니, 장기간 근무케 하여 책임지게 하는 뜻이 별로 없다. 옛 법을 되살리라."라고 하였다. 지금은 참상관, 참하관을 각 5원 뽑아 임명한다.50)

<sup>47) 《</sup>승정원일기》 705책, 영조 6년 4월 22일 경신. 光佐曰, "自今以後, 還復參下五員內, 三員則隨參上之闕, 爲先以參下初入仕差出, 二員則是參下序陞之窠, 待其仕滿, 其代亦以初入仕差出事, 分付, 何如?"上曰, "依爲之."

<sup>49) 《</sup>新補受教輯錄》 吏典 〈京官職〉조. 禁府, 參下都事二員及參上都事三員, 合五員, 定為初入仕參下窠, 後或有相換之事, 則童蒙·內侍教官相換, 其後教官有故, 本曹啓辭, 奉事相換. 雍正庚戌承傳. 오갑균은 참하도사 2원, 참상도사 3원도합 5원으로 정하되, 참하는 초임자로 하며 이는 《續大典》이 간행되기 이전의 잠정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았다. (오갑균, 1995 앞의 책, 23쪽.); 김영석은 수교의 참상도사 3원은 도사로 환원된 경력 3원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았다. 기존의 도사 2원과 참상관(=경력)에서 도사로 환원하는 3원을 합친 5원이 도사의 새로운 정식이 되었다고 보았다. (김영석, 2013 앞의 논문, 97~98쪽.)

<sup>50) 《</sup>金吾憲錄》 〈設立〉 조 3. 郎廳十員中, 參上稱經歷, 參下稱都事. 古例則參上參下各五員, 而中間變易, 參上八員, 參下二員矣. 今上庚戌鞫獄時 以爲, "參上隨卽遷轉, 而殊無久任責成之意, 俾復古例." 今卽參上參下各五員差出事.

영조 20년(1744) 《금오헌록》에 참상관은 경력으로 칭하고 인원은 5원, 참하관은 도사라 칭하며 인원은 5원으로 규정한다. 이후 영조 22년 (1746) 《속대전》에서는 《경국대전》에 규정된 경력을 혁파하고, 도사로 일원화 하였으며 도사는 참상도사(종6품) 5원, 참외도사(종9품) 5원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참하도사의 6품 승진 규정이 현종대에는 참하관인 경우에는 30개월을 채운 뒤에 6품으로 승진하도록 규정되었으나, 《속대전》에서는 900일을 채운 뒤에 승진하도록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차이를보인다.51) 이후 정조 9년(1785) 《대전통편》에서 증보된 내용에 참상도사 중 1원은 무관을 차출하고, 참외도사는 생원, 진사 출신이 아니면 임명될 수 없다고 규정이 정리되었다. 영조 6년 논의 결과 결정된 의금부도사의 직제는 이후 계속 유지되다가, 고종대 참하도사의 품계가 종9품에서 종8품으로 올라가면서 변화하였다.52)

[표 3] 영조 6년 이후 의금부도사 관원 규정 변화

시기	내용	도사 구성
《신보수교집록》(1730)	禁府,參下都事二員及參上都事三 員,合五員, 定爲初入仕參下窠.	경력(참상): 5員 도사(참하): 5員
《금오헌록》(1744)	郎廳十員中,參上稱經歷, 參下稱都事. 今卽參上參下各五員差出事.	경력(참상): 5員 도사(참하): 5員
《속대전》(1746)	經歷·都事, 今並作參上·參外都事, 參外仕滿九百, 陞六品.	경력 혁파, 도사(종6품): 5員 도사(종9품): 5員
《대전통편》(1785)	[增]續典罷經歷, 以十員分作參上·參外都事各五 員,參上一員作武窠. 參外非生·進不得差	참상도사 1員: 무과 참외도사: 생원, 진사 출신
《대전회통》(1865)	都事五員從八品. [續] 從九品. [補] 陞品.	도사(종6품): 5員 도사(종8품): 5員

<sup>51) 《</sup>續大典》 吏典 〈京官職〉 圣.

<sup>52) 《</sup>大典會通》 吏典 〈京官職〉 圣.

그렇다면 《경국대전》에 규정되어 있었던 경력이 혁파된 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가? 《增補文獻備考》 <京官職>조에 의하면, 의금부는 경력과 도사가 각 5원씩이었다가 도중에 경력은 혁파하고, 영조 6년 (1730)에 참상관과 참하관 각 5원으로 정하였다고 규정되었다.53) 《증보문헌비고》에는 경력의 혁파를 이룬 시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영조 6년 직제 개편의 시점만 기재하였다.

경력 혁파 시점에 대해서는 영조 20년(1744) 작성된 《금오헌록》에는 '경력'이라는 용어가 있다. 《금오헌록》에서 참상관을 경력이라 칭하고, 참하관은 도사라고 칭한다는 내부규정을 통해서 《금오헌록》이 작성된 시점까지는 경력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속대전》(1746)에는 경력을 없애고, 의금부도사를 참상도사와 참하도사로 나눈다고 규정하였다. 1746년 이후 《경국대전》에 규정되어 있는 종4품의 경력이 혁파되고, 도사가 종6품의 참상도사 종9품의 참하도사로 규정됨을 명시하였다. 그런 점에서 영조대 경력이 혁파된 시점은 1744년(영조 20) 《금오헌록》 작성 이후와 1746년(영조 22) 사이로 보아야 할 것이다.

영조대 의금부도사 규정의 변화와 경력의 혁파가 실제로 반영된 시점에 대해서 영조대 《금오계첩》을 통해서 더 확인해보도록 하겠다. 영조대 《금오계첩》이 만들어지는 배경이 의금부 내부 규정집인 《금오헌록》에 실려 있다. 《금오헌록》 〈許麥〉조54)에 따르면, "면신일에 첩을나누는 것은 옛 규례이다. 반드시 첩을 나눈 뒤에 참여를 허락할 일"에따라서 면신례55)를 행할 때 참석하는 의금부도사의 수만큼 계첩을 만들었다. 여기서 '分帖'한다는 것은 면신례를 행할 때 참석하는 의금부도사의 수만큼 계첩을 만들었다. 여기서 '分帖'한다는 것은 면신례를 행할 때 참석하는 의금부도사의 수만큼 계첩을 만들었다. 이를 나눠 주는 것을 뜻한다.56) 영조대 신

<sup>53) 《</sup>增補文獻備考》〈職官考〉4 義禁府. 經歷五員, 都事五員. 後革經歷, 增置都事五員, 其八以參上差, 其二以參外差. 英祖六年, 改定參上, 參下各五員.

<sup>54) 《</sup>金吾憲錄》 〈許參〉조 6. 免新日分帖, 自是舊規, 必待分帖然後許參事

<sup>55) 《</sup>金吾憲錄》 〈許參〉 圣 1. 新來之員, 參下則肅拜後四十五日而行出官禮, 又四十五日而行免新禮, 參下則出仕後三朔而行出官禮, 又三朔而行免新禮, 只計朔而行計日子事.

<sup>56)</sup> 김영석 역주, 2016 《《金吾憲錄》역주》,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48쪽(각주 150 참조).

임 의금부도사는 면신일에 선임 의금부도사를 위해서 의금부도사의 품계, 관직명, 이름, 자와 출생년, 과거사항57), 본관, 제작연대가 기록되어 있는 座目58)과 의금부도사들의 계회 모습을 담은 契會圖를 준비하여야했다. 《금오계첩》에는 당시 실제로 의금부도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의 이름만 명단에 올라간다는 점이 의미를 가진다.

[표 4] 《금오계첩》의 의금부도사 구성

년도	금오계첩	참상관	참하관	비고
1729년(영조 5) <sup>59)</sup>	義禁府圖_ 金吾僚員錄	(16)	(6)	금오좌목에는 품계가 적혀 있지 않음.
1729년(영조 5)	錦衣郎契帖	8	2	
1731년(영조 7)	金吾契帖	5	5	
1733년(영조 9)	金吾契帖	5	5	
1735전( 8조 9)	金吾契帖	5	5	
	金吾契帖	5	5	이런 너트
1734년(영조 10)	金吾契帖	5	5	이하 년도 동일
	金吾契帖	5	5	0 핃

영조대 《금오계첩》의 의금부도사 구성은 위의 표와 같다. [표 4]에서 1703년~1729년(영조 5)까지는 숙종대의 의금부낭청 체제가 유지되었다.

<sup>57)</sup> 司馬는 《금오계첩》 금오좌목에 급제한 해의 간지와 사마를 연결하여서 기재하였다. 영조대 《금오계첩》에 기록되어 있는 의금부도사 중 문과 급제 자인 인물은 1명이다. 1739년 《금오계첩》己未五月 日에 기재되어 있는 吳命修가 유일하며, 과거 이력사항에 丙午司馬와 己未柑魁라고 기록되어 있다. 무과 급제자 또한 간지와 무과를 연결하여서 기록하였다. 이외에 음직자는 과거사항을 비워두거나 入仕라고 기재하였다.

<sup>58)</sup> 현전하는 영조대 《금오계첩》 좌목에는 우측 첫 열에 '金吾座目'이라고 기 재되어 있다.

<sup>59) 1729</sup>년 《義禁府圖\_金吾僚員錄》 금오좌목에는 의금부도사의 품계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 다른 《금오계첩》은 10원의 의금부도사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데, 1729년 《義禁府圖\_金吾僚員錄》는 정월부터 8월까지 근무한 의금부도사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어 다른 《금오계첩》과 달리 22원이 기록되어 있다. 《義禁府圖\_金吾僚員錄》에 기록되어 있는 22원 의금부도사의 품계는 연대기 자료를 통해 관로 분석을 보충하였다.

[표 4]를 보면, 1729년(영조 5) 《錦衣郞契帖》 60)에서 확인되는 의금부도 사들의 품계를 분석한 결과, 숙종대(1703)의 의금부도사 관제개혁의 영향으로 참상관이 8원, 참하관이 2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의금부도사의 구성이 경력 8원, 도사 2원으로 이루어진 시기는 1704년~1730년까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730년(영조 6) 의금부도사의 관제 개편 이후 1731년 이후 부터는 5원씩 인원 구성이 유지되었다. 영조대 현전하는 《금오계첩》인 1731년(영조 7) 이후부터 1769년(영조 45) 《금오계첩》까지 모두 참상관 5원(종6품)과 참하관 5원(종9품)으로 인원이 구성되었다.

실제 1746년(영조 22) 《속대전》에 경력이 혁파되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1746년 이후 작성된 《금오계첩》인 1753년(영조 29) 《금오계첩》 癸酉八月 日 의금부도사 명단에 의금부도사 구분을 경력과 도사로하였다. 영조대 뿐만 아니라 이후 현전하는 순조대 《금오계첩》 중 경력과 도사로 구분한 금오좌목으로는 1814년(순조 14) 《義禁府先生契帖》과 1828년(순조 18) 《금오계첩》이 있다. 1814년(순조 14) 《의금부선생계첩》에 경력 5원, 도사 5원이 기록되어 있으며 임명된 순서에 따라서 경력은 上經歷~五經歷으로 표기하였으며, 도사는 一都事~五都事로 표기하였다. 1828년(순조 28) 《금오계첩》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표기되었다.

'경력'의 혁파는 《금오헌록》이 작성된 1744년(영조 20)~《속대전》이 간행된 1746년(영조 22)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746년 이후에도 경력이 종종 사용되었는데 이는 《경국대전》에 규정되어 있는 종4품의 경력의 의미가 아닌, 종6품의 참상도사를 '경력'이라는 명칭으로 지칭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앞서 직제개편 과정 속에서 살펴본 숙종 12년(1686) 의금부도사 중 무과 1과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실제 의금부도사 명단에서 확인되는 의금부도사의 구성을 살펴보면 참상도사 중 무관 1원을 차출하도

<sup>60) 《</sup>금오계첩》은 의금부도사 명단인 금오좌목과, 계회 장면을 그린 계회도로 구성되어 있다. 1729년(영조 5) 영조대 《금오계첩》의 명칭이 《錦衣郞契帖》(서울역사박물관 소장)이다.

록 한 변화가 안정되는 시기는 영조 50년(1774) 이후로 보인다. 영조대《금오계첩》을 살펴본 결과 다음 [표 5]와 같이 꾸준하게 의금부도사중 무관이 차출된 시기는 1750년대 이후부터이다. 영조 50년 이후 이러한 경향은 정조대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표 5] 영조대 《금오계첩》의 의금부도사 무관

년도	금오계첩	무관	비고
1729년(영조 4)	義禁府圖_ 金吾僚員錄	2	柳蓍相 (유시상) 尹以敎(윤이교)
1750년(영조 26)	金吾座目	1	閔原 (민원)
1753년(영조 29)	金吾契帖	1	洪旰(홍간)
1755년(영조 31)	金吾契帖	1	李基恢(이기회)
1756년(영조 32)	金吾契帖	1	金胃澖(김위한)
1759년(영조 35)	金吾契帖 落帙	1	具世德(구세덕)
1709선(종조 50)	金吾座目 幷 英宗己卯	1	具大勳(구대훈)
1762년(영조 38)	金吾契帖	1	鄭彦衡(정언형)
176011(01 Z 45)	金吾座目	1	趙毅鎭(조의진)
1769년(영조 45)	金吾契帖	1	柳鎭茂(류진무)
총합		1161)	

<sup>61) 1729</sup>년 《義禁府圖》에는 22원의 의금부도사가 기록되어 있으며 그 중 2원이 무관이었다. 유시상은 참하도사였으며 윤이교는 참상도사였다. 1750년터~ 1769년 《금오계첩》에서는 참상 도사 5원 중 1원이 무관이었으며, 이러한 경향성은 영조대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었다.

## 二. 주요 기능

## 1. 추국 및 의금부 내부 업무

영조대 의금부당청(경력, 도사)의 직제개편으로 영조 6년(1730) 참상(종6품) 5명, 참하(종9품) 5명으로 참하직을 설치하였다. 《속대전》(1746)에서는 의금부당청(=의금부도사)의 경력을 혁파하였다. 이렇게 직제개편된 영조대 의금부도사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먼저 영조대 참하도사를 지낸 박명양이 작성한 의금부 내부규정집인 《금오헌록》을 중심 자료로 영조대 의금부도사의 기능을 정리하고자 한다.62》 박명양은 영조 19년(1743) 11월 참하도사가 되었으며 영조 20년(1744) 《금오헌록》을 편찬하였다. 의금부는 다른 관서와 달리 내부 규정집이 남아있지 않으므로 박명양이 작성한 《금오헌록》은 당대의 의금부 체제를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사료이다.

《금오헌록》은 표제, 卷首<sup>63)</sup>, 본문에 해당하는 金吾廳憲으로 구성되었는데 그 중 금오청헌은 영조 20년(1744) 박명양이 작성한 28개의 목록과 순조 26년(1826) 이의현이 이전 기록을 추가하고 보완한 추록으로 이루어졌다. [표 6]을 보면, 박명양이 작성한 금오청헌의 28개의 조목들은 주제별로 나열되어 있다. 추록은 이전 기록을 수정하고 보완했으므로 여러

<sup>62)</sup> 영조대 의금부도사의 역할은 태종 14년 의금부로 명칭이 개편된 이후에 의금부도사가 수행한 역할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조선 초에는 의금부의 전신이었던 의용순금사에서 수행했던 도사의 역할 중 병권의 역할이 계속 남아 있었으나, 조선후기에는 사법행정 역할을 수행하는 관서로서 의금부의 역할이 확립되면서 사법행정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다.

<sup>63)</sup> 서문에는 박명양(영조 20)이 지은 記, 이의현(순조 26)이 지은 書, 하백원 (1837)이 쓴 金吾記義 내용이 실려 있다. 박명양이 의금부도사에 임명된 시기는 1743년(영조 19) 11월 5일이고, 서문을 쓴 것은 1744년(영조 20) 11월 1일이므로, 박명양이 재직 중에 금오청헌을 작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추록을 작성한 이의현 또한 의금부도사 재직 중에 그것을 작성하였으며, 금오기의 또한 하백원이 의금부도사로 재직하던 중에 의금부가 '금오'별칭을 갖게 된 연원을 밝힌 것이다. (공평도시유적전시관, 2019 앞의 책, 68~70쪽.)

주제가 혼재되었다. 또한 《금오헌록》 원문의 각 조문은 모두 '一'로 시작하고 있으며, 본문에서는 각 목록에서 1부터 순서대로 조문 번호를 항목 뒤에 붙였다.

[표 6] 《금오헌록》 본문 金吾廳憲의 구성

본문	내용	작성자
	〈설립(設立)〉, 〈관부(官府)〉, 〈압나(押拿)〉,	
	〈개좌(開坐)〉, 〈설국(設鞫)〉, 〈탈품(頉稟)〉,	
	〈출사(出使)〉, 〈시위(侍衛)〉, 〈진배(進拜)〉,	
	〈봉숭(封崇)〉, 〈좌차(座次)〉, 〈입사(入仕)〉,	
	〈허참(許參)〉, 〈차임(差任)〉, 〈중래(重來)〉,	박명양
金吾廳憲	〈상직(上直)〉, 〈회공(回公)〉, 〈규검(糾檢)〉,	(영조 20)
30 H AU / E	〈조절(操切)〉, 〈수유(受由)〉, 〈식가(式暇)〉,	
	〈예목(禮木)〉, 〈분아(分兒)〉, 〈포폄(褒貶)〉,	
	〈보사(報仕)〉, 〈선생(先生)〉, 〈장방(長房)〉,	
	〈고적(古蹟)〉.	
	〈추록(追錄府)〉<工房節目>	이의현
	一	(순조 26)

의금부도사는 의금부의 실무를 담당하는 관원으로서 의금부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의금부도사가 담당한 업무를 크게 推鞫 및 의금부 내부 업무와 兵權 업무로 구분하였다.

우선, 의금부도사는 죄인의 추국에 앞서서 죄인을 체포해오는 일(拿來)을 수행하였으며, 추국의 판결에 따라서 죄인을 의금부에서 配所인 다른 장소로 押送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죄인이 감사, 병마절도사, 수군절도사, 역적이나 강상죄인이면 의금부도사가 체포해 오고, (감사, 병마절도사, 수군절도사를 제외한) 당상관 이상이면 서리가 체포하고 당하관 이하이면 나장이 체포해온다. 六卿이상(정2품 이상)이면 의금부도사가 압송하고, (육경이상을 제외한)당상관과 가선대부인 자(종2품에 오른 자)이면 서리가 압송하고, 당하관이면 나장이 압송한다. 만약위리안치 할 죄인이면, 당상관과 당하관을 막론하고 의금부도사가 압송한

다. 64)

의금부도사는 모든 죄인의 체포와 압송을 담당한 것이 아니라 죄인의官品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의금부도사, 서리, 나장이 분담하여서 죄인의나래와 압송을 처리하였다. 의금부도사는 죄인 체포와 압송을 위해서 지방에 가서 업무를 처리하는 일이 많았다.

이렇게 죄인을 체포하거나 配所로 압송하기 위하여 지방에 나가는 출사 뿐만 아니라 죄인을 추국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推鞫廳에 나가는 것도출사로 규정하였다. 《금오헌록》 〈追錄〉조에는 국청출사와 이외의 출사를 구분해 설명했다. 국청에 출사하는 도사는 가장 늦게 임명된 新入都事부터 나갔으며, 국청이 아니라 평상시에 출사할 때는 임명된 지 가장 오래된 舊任都事부터 나가서 업무를 수행하였다.65)

죄인의 관품에 따라서 의금부도사, 서리, 나장이 분담하여서 죄인을 체포해오면, 그에 대한 국옥이 행해졌다. 의금부도사는 죄인의 체포와 압송을 담당했을 뿐 아니라 직접 국옥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영조 21년(1745) 下敎에서는 악역(惡逆)에 관계되는 경우, 임금을 속이는 부도(不道)한 짓을 한 경우, 대훈(大訓)을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 청(鞫廳)을 열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66)

반역사건에 대해서는 국왕이 직접 참여하는 추국 즉 친국(親鞫)을 행했는데, 친국이 행해질 때는 의금부도사 5원이 참여하였다. 국청에 차출된 의금부도사는 각각 담당하는 업무에 따라서 別刑房, 文書色, 守幕이라고 불리었다. 의금부도사 전체 인원 10원 중 별형방 2원, 문서색 2원, 수막도사 1원 총 5원이 참여했던 것이다. 이들은 상경력이 수석 당상관에게 나아가 口傳政事로 임명된 하위 순서에 따라 차출하였다. 그런데 순서에 해당하는 관원이 출사하여 그 후임을 뽑기 전이면 위 서열로 거슬

<sup>64) 《</sup>金吾憲錄》 〈押拿〉 圣 1. 凡罪人, 監、兵、水使及犯逆、綱常罪人, 則郎廳拿來; 堂上以上, 書吏拿來; 堂下以下, 羅將拿來. 六卿以上, 則郎廳拿押; 堂嘉善, 書吏拿押; 堂下, 羅將拿押. 若圍籬, 則勿論堂上、堂下, 郎廳拿押事.

<sup>65) 《</sup>金吾憲錄》 〈追錄〉 乙. 鞫廳出使, 自下達上; 平時出使時,自上達下, 自是廳中前規.

<sup>66)《</sup>續大典》 刑典 〈推斷〉 圣.

러 올라가는 순서로 차출하였다.<sup>67)</sup> 그러나 친국에 가장 신입 도사부터 차출하였다는 것을 선뜻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나, 국청에 출사하는 도사가 모두 참하도사로만 구성되지 않고 상급자인 참상도사가 섞여들어 가기 마련이었다.

또한 《금오계첩》에 기록된 의금부도사 명단의 순서를 보면, 품계가 높은 참상도사부터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금오계첩》이 작성된 시점에서 의금부도사에 임명된 순서에 따라서 가장 오래된 도사부터 기록되었다. 가장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의금부도사가 최근에 임명된 도사이다. 이렇듯 의금부도사들의 위계에 있어서 임명된 순서를 중시하여서 업무에 배치되었으며, 국청출사와 평상시 출사의 경중을 따지기 보다는 두 업무 모두 추국과 관련된 출사 업무이므로 국청 출사와 평상시 출사 순서를 다르게 정함으로써 업무의 균형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별형방도사는 의금부에서 중죄인을 국문할 때 특별히 설치하는 형방 (刑房)의 도사로서, 형방승지 보조역할을 수행하였다. 문서색은 조서(調書)작성을 담당하였다. 죄인의 추국을 위한 국청이 설치되면 의금부도사는 죄인 심문 내용을 작성하였다. 또한 수막의 업무를 맡게 된 의금부도 사는 '막'을 지키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막'은 국청에 나갈 죄인이 대기하던 곳으로서<sup>68)</sup> 수막도사는 막을 지킬 뿐만 아니라 죄인의 상태를 파악하였다.<sup>69)</sup>

<sup>67) 《</sup>金吾憲錄》 〈設鞫〉 圣 5. 親鞫時, 別刑房二員, 文書色二員, 守幕一員, 上經歷詣首堂上前, 一從下口傳劃出. 而當次之員出使, 未出代之前, 則亦爲泝次以行事.

<sup>68) 《</sup>승정원일기》 760책, 영조 9년 5월 28일 무신. 上曰, "此罪人下幕, 金潤龜, 更爲上鞫."

<sup>69) 《</sup>승정원일기》 760책, 영조 9년 5월 28일 무신. 죄인 황유정이 병세가 심하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영조는 "守幕都事處, 着實問其病狀, 使之摘奸, 可也."고 하였다. 수막도사가 그 병의 증상을 착실하게 묻도록 한 것이다. 판의금부사 宋寅明의 말(宋寅明進伏曰, "使囚幕都事, 看審罪人黃有澄病勢, 則似非染病云矣.")에서도 수막도사는 죄인의 상태를 살피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보인다.

[표 7] 영조대 의금부도사 추국 관련 업무와 차출 순서

역할	도사 명칭	도사 차출 방식
국청 설치 시, 죄인을 대궐로 압송하는 역할	압송도사(押送都事) [출사도사(出使都事)]	임명 순서 역순 신입도사 (新入都事)~
지방에 나가 죄인을 체포하거나 배소(配所)로 압송	출사도사(出使都事)	임명 순서 구임도사 (舊任都事)~
형방승지 보조	별형방(別刑房)	임명 순서 역순
조서(調書) 작성	문서색(文書色)	신입도사
죄인 대기장소인 '막'관리	수막도사(守幕都事)	(新入都事)~

이렇듯 영조대 의금부도사는 죄인의 신문과 수색을 담당하였고, 또한 수사기록 및 공문서 작성의 실무를 관장하였으므로 중죄인을 다루는 국 청에도 차출되어 실무를 담당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였다.70) 의금부도사 는 국옥을 행할 때 처리하는 업무인 죄인압송 및 관리 감독, 문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 뿐만 아니라 국청이 설치되지 않았을 때, 기초 업무도 분담하였다.

의금부는 한성부 중부에 '본부'가 있었으며, 대궐 밖에 설치한 일종의의금부 분소인 '당직청'이 존재하였다.<sup>71)</sup> 본부입직 도사는 국옥을 행할때 의금부의 일반사무를 담당하며<sup>72)</sup> 중죄인이 먹는 음식물 그릇을 직접살피는 역할을 수행하였다.<sup>73)</sup> 또한 謄錄冊 출입도 담당하였다.<sup>74)</sup>

<sup>70)</sup> 오갑균, 1995 앞의 책, 28쪽.

<sup>71)</sup> 의금부도사의 본부와 당직청 근무 담당자의 성명을 입직 주기가 시작되기 하루 전에 禮房書東가 分記冊을 가지고, 일도사인 '상병방'에게 가서 본부와 당직청에 입직할 차례에 해당하는 담당자의 성명을 가장 최근에 의금부 도사가 된 사람부터 시작하여서 2일씩 나눠 적도록 되어 있다. 각 도사의 근무교대 시간은 본부는 진시(오전 9시~11시), 당직청은 묘시(오전 7시~9시)이다. (《金吾憲錄》 〈上直〉조 1. 前期一日, 禮東持分記, 往上兵房前, 本府, 堂直入直當次司員, 自下達上, 二日式分記, 而勿推諉事; 《金吾憲錄》 〈上直〉조 2. 各位上直交代, 本司, 辰時; 堂直, 卯時. 過時, 則罰直一日, 甚者二日事.)

<sup>72) 《</sup>金吾憲錄》 〈設鞫〉 조 8. 鞫獄時, 府中凡事, 入直當之….

<sup>73) 《</sup>金吾憲錄》 〈設鞫〉 圣 11. 重囚朝夕及無時所食之物,入直郎廳,必自看審 器皿,出給之際亦然.

당직청도사는 대궐의 일반 사무를 처리하였다. 본부도사와 당직청도사를 차출하는 방식은 신입도사부터, 즉 가장 늦게 의금부도사에 제수된 도사부터 차출되는 방식이었다.

의금부도사는 항상 본부에 입직하는 도사, 당직청에 입직하는 도사 1 원씩 있어야 했다. 만약 공문이 오면 본부 입직 도사가 당상관들에게 공 문을 돌리기 위해서 자리를 비워야 했는데 이때 대신 본부를 지키는 '交 代郞廳'이 입직하게 되었다.<sup>75)</sup> 이외에는 추국 상황, 이외의 업무 수행에 따라서 도사가 차출되었다.<sup>76)</sup>

[표 8] 영조대 의금부도사 기초 업무와 차출 순서

역할	도사 명칭	도사 차출 방식
본부(의금부)입직하여 일반 사무 처리 및 중죄인의	본부도사(本府都事)	
그릇 살피는 역할, 공문 회람, 등록책(謄錄冊) 출입 담당	[입직도사(入直都事)]	임명순서 역순 新入都事~
대궐의 일반 사무 처리 (본부에 공문서 통지)	당직청도사(當直廳都事)	
본부 입직 도사가 공문회람을 위해 자리를 비울 경우, 대신 본부를 지키는 역할	공사교대 (교대도사, 교대낭청)	-

<sup>74) 《</sup>金吾憲錄》 〈官府〉 圣 6. 樓上庫所置文書, 卽逆獄推案日記, 謄錄冊. 推案則堂上備二員後, 主官開閉. 謄錄則入直郎廳, 專掌出入.

<sup>75) 《</sup>金吾憲錄》 〈回公〉 圣 1. 本府公事, 勿論緊歇緩急, 事體至重. 入直郎廳, 請坐交代後, 即刻回鑑于諸堂上前, 不敢暫時濡滯.

<sup>76)</sup> 의금부에서 의금부도사 인원 차출과 관련한 승정원일기 기사를 살펴보면, 이렇게 본부입직, 당직입직, 공사교대도사 각 1원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는 기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도사가 차출되었다. (《승정원일기》 834책, 영조 12년 9월 18일 기유. 又以義禁府言啓曰, "今此文武科庭試春塘臺設場時,本府都事十員,並皆赴擧. 本府入直·當直入直各一員及公事交代一員, 闕內三門禁亂官三員, 慕華館南北門禁亂官二員, 當以八員分差, 而無以備數. 假都事八員, 令該曹卽爲分差之地, 何如?"傳曰, "允.")

의금부도사는 의금부 내부의 규찰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의금부 내부 관사의 관리를 위해서 업무가 분담되어 있었다.

상경력은 곧 낭청의 우두머리로서, 관사를 전적으로 주관하니 잠시도 비워 둘 수 없다. … 그리고 상경력으로 차임된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수석도사가 관사를 전적으로 주관한다.77)

영조대 참상도사와 참하도사는 각각의 분담하는 업무에 따라서 지칭하는 용어가 있었다. 영조대 참상도사 5원 중 1원은 上經歷<sup>78)</sup>이라고 불리었으며, 의금부 전체를 총괄함과 동시에 서리를 관장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sup>79)</sup> 상경력을 제외한 나머지 9원의 도사들이 의금부 내부 업무를 분담하였다.

참상도사 중에서 二經歷은 上公事員으로서, 참하도사 중 一都事는 下公事員이 되어 함께 관사 전체를 규찰하였다.<sup>80)</sup> 공사원의 업무는 동료의 근무 태도를 규찰하는 것이었다. 잘못이 있는 자를 공사원이 거론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공사원까지 처벌을 받았다.<sup>81)</sup> 그만큼 의금부도사는 의 금부도사 상호간의 견제를 통해서 엄격하게 업무 수행을 감독받았다.

일도사는 二經歷을 보조하여서 동료의 태도를 규찰하는 하공사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 뿐만 아니라, 상병방의 업무도 수행하였다.82) 수석도 사가 상병방으로서 나졸들을 맡아서 출장 등의 일을 일률적으로 처리하

<sup>77) 《</sup>金吾憲錄》 〈封崇〉 圣 4. 上經歷, 即郎席之長也, 專檢一司, 不可暫曠. … 而上經歷未封崇之前, 一都事, 專檢一司事.

<sup>78) 《</sup>金吾憲錄》 〈封崇〉조. 상경력은 경력들 중에서 면신을 거친 음관인 참 상도사가 대상이었으며 상경력의 선출은 대상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도사들이 1인씩 들어가서 圈點하여 선출하였다. 상경력은 의금부도사의 우두머리로서 상경력에 대해서 우대하였는데, 상경력은 공사원의 업무, 출장 등의 업무에서 배제하였다.

<sup>79) 《</sup>金吾憲錄》 〈差任〉 圣 6. 上經歷拿書吏, … 凡出使等事, 一從井間, 無得違越事.

<sup>80) 《</sup>金吾憲錄》 〈差任〉 조 1. 二經歷爲上公事員, 一都事爲下公事員, 糾察一司, 而若無經歷爲, 則一二都事爲之事.

<sup>81) 《</sup>金吾憲錄》 〈糾檢〉 조 3. 公事員糾檢同僚勤慢. 而各位凡有可論之失, 而公事員不卽擧論, 則並爲論罰事.

<sup>82) 《</sup>金吾憲錄》 〈差任〉 조 3. 一都事例兼上兵房….

고 법이나 규정을 위반하지 못하도록 관리 감독하였다.<sup>83)</sup> 이렇듯 상병방의 업무는 나졸들의 관리 감독이었으며, 曹司郎廳(신입도사)<sup>84)</sup>도 일도사와 함께 하병방의 업무를 분담하였다.<sup>85)</sup> 다만, 국청이 설치되었을 때는조사당청이 나졸 관리를 전담하였다.<sup>86)</sup>

[표 9] 영조대 의금부도사 의금부 내부 업무 분장

어 장	도사	명칭	ען יי
역할	주책임자	보조책임자	비고
관사 총괄 관리	   상경력(上經歷)(參上)	_	_
서리 관리 감독	상경력(上經歷)(參上)	_	_
동료의 근무 태만 관찰 [공사원(公事員)]	이경력(二經歷) [상공사원(上公事員)]	일도사(一都事) [하공사원(下公事員)]	-
			국청
나졸 관리	일도사(一都事)	조사낭청(曹司郎廳)	설치시
[병방(兵房)]	[상병방(上兵房)]	[하병방(下兵房)]	조사낭청
			이 전담

<sup>83) 《</sup>金吾憲錄》 〈差任〉조 6. 上經歷拿書吏, 上兵房拿羅將, 凡出使等事, 一從 井間, 無得違越事.

<sup>84)</sup> 조사당청은 중앙관사의 당청 중에 새로 임명되어 와 일의 경험이 적은 사람을 이른다고 설명되었다. 중종 12년 기사에 '六曹郞僚, 新授者謂之曹司'이라하여서 새로 제수된 육조의 당료를 조사라고 하였는데, 김진옥은 의금부에서도 새로 임명된 도사를 조사당청, 조사, 조사도사 등으로 불렀다고 설명하였다. (《중종실록》 28권, 중종 12년 6월 9일 계축; 김진옥 역주, 2016 앞의책, 92쪽.)

<sup>85) 《</sup>金吾憲錄》 〈差任〉 조 3. 一都事例兼上兵房, 曹司兼下兵房事.

<sup>86) 《</sup>金吾憲錄》 〈設鞫〉 조 10. 鞫廳時羅卒檢飭等事. 上下兵房主管, 而下兵房 專當事.

#### 2. 兵權 업무

의금부로 명칭을 고친 이후 의금부는 兵權에 직접 관련된 업무를 없애고 다만 王獄으로서 죄수를 처결하는 일인 사법관련 업무를 전담하였다. 하지만 영조대에도 여전히 의금부도사가 수행한 병권 관련 업무가 남아 있었다.

첫 번째는 의금부도사가 임금이 도성 밖으로 거둥할 때 수행한 侍衛 업무이며, 두 번째는 禁亂官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이다. 국왕이 도성 밖으로 거둥할 때와 도성 안에서 거둥할 때 의금부도사는 시위에 차출되었다. 이때 의금부도사의 인원수와 복장 규정은 다음과 같다.

⑦왕이 도성 밖으로 거둥할 때는 導駕 2원, 考喧 2원이고, 도성 안에서 거둥할 때는 導駕 2원, 考喧 2원, 挾輦 2원, 駕後 2원, 假當直 1원, 本府入直 1원으로 하였다.87)

(나)도성 안에서 왕을 호위할 때는 흑단령을 입고 칼을 찬다. 도성 밖에서 어가를 수행하는 4원은 홍의를 입고 깃을 꽂은 갓을 쓰며 칼을 차고 활·화살을 갖춘다. 그 밖의 인원은 모두 융복을 입고 맞이하고 전송하되, 왕이 돌아올 때 까지 본부에서 직숙한다.88)

의금부도사는 왕이 도성 밖으로 행차할 때 총 4원이 참여하였다. 도성 안을 행차할 때는 도가, 고훤, 협련, 가후 각각 2원씩 총 8원이 필요하였다.

또한 의금부도사가 시위 업무를 수행할 때는 복장 규정도 정해져 있었다. 위의 ⓒ의 기록을 보면 도성 안과 밖에서 왕을 호위할 때 각기 규정된 복장이 달랐다.

이외에도 의금부도사는 과거 시험장을 관리하는 금란관으로서의 업무

<sup>87) 《</sup>金吾憲錄》 〈侍衛〉 조 1. 城外舉動: 導駕二員, 考喧二員, 城內: 導駕二員, 考喧二員, 挾輦二員, 駕後二員, 假堂直一員, 本府入直一員事.

<sup>88) 《</sup>金吾憲錄》 〈侍衛〉 圣 2. 城內諸侍衛, 黑團領佩劍;城外隨駕四員, 紅衣羽 笠佩劍弓矢. 餘外諸員, 俱以戎服迎送, 而回鑾前直宿本府事.

를 수행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⑦시험장의 禁亂官은 의금부의 實都事로 차정한다. 도사가 과거에 응시하면 監察이 대신 관할한다. 금란관과 入門官 중에 下人을 시켜 유생에게 몰래 서책을 전해주게 한 자는 파직한다.89)

①또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이번 증광 초시 때, 본부의 도사(都事) 10 원 중에 1원은 출사하였고, 9원은 모두 다 과거에 응시하러 갔으므로, 본부 및 당직 도사 각 1원, 공사(公事)를 회람시킬 때 교대할 도사 1원, 문무과(文武科) 시소(試所) 네 곳의 금란도사(禁亂都事) 각 1원의 수효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가도사(假都事) 7원을 해당 조로 하여금 차출하여 나누어 차임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90)

딸이주진이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이번 8월 16일 중시 대거 별시(重試對擧別試)로 치러지는 문무과 초시 때 본부의 도사 10원이 모두 과거에 응시합니다. 본부에 입직할 도사와 당직청에 입직할 도사, 공사(公事)를 교대할 도사 각 1원, 문무과 일소(一所)와 이소(二所)의 금란도사(禁亂都事) 각 1원 등 7원을 나누어 차임해야 합니다. 가도사(假都事) 7원을 해당 조로 하여금 차출하여 분배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91)

영조대 의금부도사 또한 금란관으로서 과거시험장의 부정행위를 막는 일을 하는 데서 예외가 아니었다.<sup>92)</sup> 금란관 차출과 관련하여서는 《속대전》에 규정되었다. 위의 ⑦ 《속대전》의 내용에서 보이듯이 의금부도사를 시험장 금란관으로서 차출할 경우에는 실도사로 차정한다고 규정되었다.

영조대 의금부도사의 시험장 금란관으로서 업무 수행은 이전과 어떤 측면에서 차이가 있었을까? 영조대 의금부도사의 금란관 업무는 의금부

<sup>89)《</sup>續大典》 禮典 〈諸科〉조.

<sup>90) 《</sup>승정원일기》 599책, 영조 1년 8월 23일 정해[무자]. (원문은 丁亥로 되어 있으나, 간지 순서에 따라서 戊子로 바로 잡아 [무자]로 표기하였다.)

<sup>91) 《</sup>승정원일기》 831책, 영조 12년 8월 15일 병자.

<sup>92) 《</sup>金吾憲錄》 〈封崇〉조 8. 凡輪直禁亂官時, 上經歷, 不敢分差事.

도사가 과거에 응시할 경우에 금란관으로서의 업무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와 관련하여서 이전과 차이를 보인다. 《전록통고》(1706)에서는 의금부도사가 과거에 응시할 경우에는 금란의 일을 다 마친 이후에 시험에 응시하도록 규정하였다.<sup>93)</sup> 그러나 《속대전》(1746) 단계에서 의금부도사가 과거에 응시할 경우에는 금란의 업무를 사헌부 감찰이 대신하게 함으로써 영조대 의금부도사가 과거에 응시하는 데 방해받지 않도록 하였다.

영조 원년의 ⓒ사례를 보면, 본부 도사 10원 중 1원이 출사하였고, 9원이 모두 과거에 응시하였다. 영조대에는 의금부도사가 과거에 응시할 경우에 금란의 업무를 배제하였으므로 10원의 의금부도사 중에서 현재 업무를 수행할 의금부도사가 없는 상황이다. 이때 위의 ⑦규정상으로는 실도사 중에서 금란관을 차출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영조대에는 이와 같이 부족한 도사가 생길 경우에는 가도사를 차출하는 경우가 생겨났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⑪의 상황에서는 본부도사 1원, 당직도사 1원, 공사교대도사 1원, 금란도사 4원 총 7원이 필요하였으므로, 그만큼 가도사로 차출하기로 한 것이다.

지금까지 영조대를 중심으로 의금부도사의 업무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영조대 의금부도사는 죄인의 체포와 압송, 추국과 관련된 업무 뿐만 아 니라, 의금부 내부 규찰, 재정, 시위, 금란관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 다. 의금부도사가 수행한 다양한 업무로 인해서 의금부도사 인원인 정원 10원으로 업무를 수행이 부족한 경우에는 假都事를 차출하였다.

영조대 의금부도사는 의금부 내부의 관리 감독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참상·참하도사의 위계가 존재하였으나. 그 이외의 업무에서는

<sup>93) 《</sup>典錄通考》 禮典 〈諸科〉조. 試場禁亂官, 例以義禁府實郞廳差定, 其應赴 試者, 所委禁亂事畢後, 始入場, 其畫直禁亂事, 則交付門外監察.

참상 참하를 나누지 않고 일했던 것으로 보인다. 영조대 의금부도사는 경력을 혁파하고 도사로 명칭이 일원화되어 참상도사와 참하도사로 구분 하였지만, 의금부도사가 담당하는 역할에 따라서 차출하는 방식은 임명된 순서에 따르거나 임명된 순서에 역행하는 순으로, 즉 품계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임명 순서에 따라서 차출되는 방식을 따랐다는 점에서 특징을 보여준다. 다음 장에서는 실제 참상도사와 참하도사에 임명된 인물들의 사례를 분석하여 의금부도사의 성격에 대해서 더 살펴볼 것이다.

### 三. 실제 임명 사례

#### 1. 初入仕職과 과거이력

의금부도사는 그 직책을 제수받은 뒤에 정식 의금부 관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출관례'와 '면신례'를 거쳐야 했다.<sup>94)</sup> 영조대 참상도사는 숙배후 45일이 지났을 때의 출관례와 그로부터 다시 45일 뒤에 면신례를 치렀으며, 참하도사는 그 두 의례에 각각 90일씩 걸려 총 6개월이 지나야정식 관원으로 인정받았다.<sup>95)</sup>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승정원일기나 조선왕조실록의 의금부도사 명단 자료가 아닌, 의금부도사의 내부 운영 체계를이해하기 위해서 면신하는 날의 의금부도사의 명단, 즉 실제 의금부의정식 관원이 되어 업무 수행을 한 의금부도사 명단을 분석하였다.

영조대 《금오계첩》 총 21점에 기록된 의금부도사 169원 중 참상도사는 총 95원, 참하도사는 74원이다. 의금부도사의 출신을 살펴보면, 1739년 《금오계첩》己未五月 日에 기록된 문관 吳命修 1원, 1729년, 1750년, 1753년, 1755년, 1756년, 1759년, 1769년에 기록되어 있는 무관 11원, 나머지 157원이 음관이었다.

영조대 의금부도사에 임명된 인물들의 전력과, 이후 관로 분석을 통해서 의금부도사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우선, 영조대 《금오계첩》에 참상, 참하도사로 구분되어 있는 도사 중 초입사직이 확인되는 참상도사는 80원, 참하도사는 63원으로 총 143원이 다.

<sup>94)</sup> 출관하기 전 의금부도사를 의금부 본부에서 '新位'라고 불렀으며(《金吾憲錄》 〈入仕〉조 4. 出官前, 廳中以新位稱號事.), 출관한 후에 의금부도사를 '一新', '二新' 하는 식으로 선후에 따라서 호칭하였다.(《金吾憲錄》 〈許參〉조 5. 出官後, 廳中以一新稱號〈出官司員數多, 則以一新, 二新, 從先後漸次稱號。〉)

<sup>95)</sup> 신입도사가 면신례를 치르기 전에 다른 관사로 옮겼다가 재임명되어 의금부로 온 경우에는 이전에 근무했던 날짜를 합산하여서 면신하게 하였다. (《金吾憲錄》 〈重來〉조 1. 新入重來, 則並計前仕免新事.)

[표 10] 영조대 《금오계첩》에서 확인되는 참상도사 초입사직

관직	參奉	奉事	童蒙教 官	監役	禁府都事	守奉 官	都事	합계
인원	49	8	1	17	1	4	0	80

위의 [표 10]을 참고하면, 영조대 참상도사 중 초입사직으로서 參奉이 대략 6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監役이 그 뒤를 따른다. 참상도사 중 의금부도사로 초입사한 인물은 趙榮宗 1원이다. 참상도사조영종은 종6품의 참상도사로 초입사한 것이 아니라 종9품의 참하도사로 초입사한 후 참상도사직을 역임하였다.

[표 11] 영조대 《금오계첩》에서 확인되는 참하도사 초입사직

관직	參奉	奉事	童蒙教 官	監役	禁府都 事	守奉 官	都事	합계
인원	39	2	1	1	19	0	1	63

영조대 참하도사는 위의 [표 11]에 정리된 대로 초입사직이 확인되는 인원은 총 63원이다. 참하도사 63원의 초입사직을 분석한 결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관직은 참상도사와 같이 참봉이다. 그러나 그 다음의 비중에 있어서는 참상도사와 차이를 보인다. 참하도사의 초입사직으로 2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관직은 의금부도사였다. 영조대 참하도사 중 초입사직이 의금부도사인 인물은 총 19원이 해당하였다.

앞서 영조 6년 직제 개편 과정에서 살펴보았듯이 영조대 참하도사에 명망 있는 자제들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참하도사는 생원, 진사를 거쳐야했다. 실제 영조대 《금오계첩》에 기록되어 있는 참하도사의 사마시 이력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영조 5년(1729) 《금오계첩》 96)에 기록되어 있는 의금부도사 중 참상 도사는 8원, 참하도사 2원으로 영조 6년 관제 개편 이전의 상황을 보여

<sup>96)</sup> 공평도시유적전시관, 2019 앞의 책, 139쪽(1729년 《錦衣郞契帖》 참고).

준다. 이때 참하도사 2원 尹敬龍과 沈鐸은 모두 사마시 출신으로서 참하도사로서의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였다. 영조 6년 대신들의 논의가 있기 이전인 영조 5년에도 참하도사는 사마시 이력을 가진 사람들이 제수되었다.

영조 6년 이후의 상황을 살펴보면, 참하도사는 전원 생원, 진사 이력을 가지고 있었다. 1734년 《금오계첩》 甲寅正月 日97), 1748년 《金吾郎契會圖》98), 1762년 《금오계첩》 甲午十一月 日99) 3개의 《금오계첩》에서는 참하도사만 생원, 진사 이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3개의 《금오계첩》에 기록되어 있는 참상도사 중에서 생원, 진사 이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은 없었다. 참상도사는 참하도사와 달리 사마 이력을 요구하는 것을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실제 《금오계첩》에 기록되어 있는 참상도사는 전원이 사마 이력을 가진 사례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영조대 3개의《금오계첩》 이외에는 참상도사 중에서도 생원, 진사 이력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 인원은 총 25 원이다.

[표 12] 영조대 참상도사 중 사마시 출신

금오계첩	참상도사	사마시 이력	비고
1729년(영조 5)	8	2	柳壽觀 (유수관)
錦衣郞契帖	8	<u> </u>	李度 (이도)
1731년(영조 7) 金吾契帖 辛亥十一月		1	李義浹(이의협)
1733년(영조 9) 金吾契帖 癸丑九月 日	5	1	辛義立(신의립)
1734년(영조 10) 金吾契帖 甲寅七月 日		4	權世隆(권세륭) 洪尙輔(홍상보) 李重彦(이중언) 趙階(조계)

<sup>97)</sup> 공평도시유적전시관, 2019 앞의 책, 145, 147쪽(1734년 《금오계첩》 참고).

<sup>98)</sup> 공평도시유적전시관, 2019 앞의 책, 154쪽(1748년 《錦衣郞契會圖》 참고).

<sup>99)</sup> 공평도시유적전시관, 2019 앞의 책, 162쪽(1762년 《금오계첩》 참고).

1739년(영조 15)			趙榮宗(조영종)
		2	, _,,,,,,,,,,,,,,,,,,,,,,,,,,,,,,,,,,,,
金吾帖 己未正月 日			李宗遠(이종원)
1739년(영조 15)			
   金吾契帖 己未五月 日		1	金東望(김동망)
1745년(영조 21)			
金吾契帖 己丑三月 日		1	尹東暹(윤동섬)
1749년(영조 25)			沈鑐(심유)100)
		3	洪龜錫(홍규석)101)
金吾契帖 己丑五月 日			李命興(이명흥)
1750년(영조 26)			蔡膺一(채응일)
		2	
金吾座目 庚午四月 日			宋載和(송재화)
175513/63 7 91)			洪有徵(홍유징)
1755년(영조 31)		3	安取範(안취범)
金吾契帖			李錫奎(이석규)
1==2 1(+1== 00)			
1756년(영조 32)		2	尹得宣(윤득선)
金吾契帖 丙子八月 日			柳煒(류위)
1759년(영조 35)			
金吾契帖 落帙		2	朴誠一(박성일)
,,,,,,,,,,,,,,,,,,,,,,,,,,,,,,,,,,,,,,,			李章祜(이장호)
己卯七月 日			
1769년(영조 45)			
金吾座目 己丑九月 日		1	嚴思敏(엄사민)
, , , , , , , , , , , , , , , , , , , ,	05100)	05	
총합	85102)	25	

실제 참상도사는 참상도사로 제수되기 위해서는 사마이력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참상도사가 사마 경력을 가지고 있었던

\_

<sup>100) 1748</sup>년 《金吾郎契會圖》 작성 당시 참하도사였으나, 1749년 《금오계첩》 己丑五月 日 작성 당시에는 참상도사로 근무하였다.

<sup>101) 1739</sup>년 참하도사로서 근무하였으며, 이후의 관로는 다음과 같다. 顯陵參奉 (1744)-尚瑞直長(1748)-義禁府都事(1749.3.25.)-木川縣監(1749.8.10)

<sup>102)</sup> 영조대 현전하는 《금오계첩》에서 참상도사 수는 총 95원이며, 그 중에 10원은 무관이다. 그러므로 무관을 제외한 음관 출신 참상도사 85원 참상도 사의 사마시 이력을 분석하였다.

#### 것일까?

영조대 참상도사 85원 중 25원이 사마이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대략 30%에 해당한다. 앞의 [표 12]를 살펴보면 영조 6년(1730) 직제 개편 이전에 사마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례인 1729년(영조 5) 《錦衣郞契帖》 참상도사 8원중 2원으로 柳壽觀(유수관)과 李度(이도)이다. 이도는 참하도사를 거친 후에<sup>103)</sup> 1729년 참상도사직을 제수받았다. 이도는 참하도사와 마찬가지로 처음에 참하도사를 제수받기 위한 요건인 사마 출신 이력을 가지고 참하도사로 재직한 이후에 1729년 참상도사직을 제수받은 사례이다.

앞의 [표 12] 중 1739년 《금오계첩》 己未 正月 日 에 참상도사로 기록되어 있는 趙榮宗은 1730년 참하도사로 초입사한 이후 직장, 주부직을 역임하여 승진하였다. 조영종은 1738년 참상도사직을 제수받았다. 이도와마찬가지로 조영종 또한 참하도사를 역임한 이후에 참상도사직을 제수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그는 영조 14년(1738) 7월 1일에 참상도사를 제수받고, 1739년 정월에도 참상도사로 근무하였다.

앞서 살펴본 인물들과 달리 참하도사를 역임하지 않은 참상도사 중에서 사마 이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은 앞의 [표 12] 1733년 《금오계첩》 癸丑九月 日104)에서 확인되는 辛義立이다. 신의립은 1727년 參奉105)으로 초입사하여 봉사106), 직장107), 주부108)를 거쳐 1732년 11월 21일 참상도 사직을 역임하였다.109) 신의립은 참상도사를 역임하기 이전에 전력은 1732년에 임명받은 주부였다. 이후 1733년 12월 27일 현감직을 제수받았다.110)

<sup>103) 《</sup>승정원일기》 580책, 영조 즉위년 11월 23일 계해. 1724년 기사에 "禁府都事李度, 濟用奉事李弘躋, 相換"이라는 것은 1724년에 이도가 의금부도사로 재직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도는 참하도사로서의 자격요건인 사마를 거친 이후에 참하도사가 될 수 있었으며, 이후에 참상도사로 제수된 것이다.

<sup>104)</sup> 공평도시유적전시관, 2019 앞의 책, 143~144쪽(1733년 《금오계첩》).

<sup>105) 《</sup>승정원일기》 637책, 영조 3년 4월 1일 정해.

<sup>106) 《</sup>승정원일기》 673책, 영조 4년 10월 28일 을사.

<sup>107) 《</sup>승정원일기》 702책, 영조 6년 3월 14일.

<sup>108) 《</sup>승정원일기》 745책, 영조 8년 윤5월 17일 임인.

<sup>109) 《</sup>승정원일기》 874책, 영조 14년 7월 1일 신해

참상도사들 중에서 생원, 진사 출신인 인물들은 참하도사로 임명되고 이후에 참상도사직을 제수받았다. 1749년 참상도사로서 사마이력을 가지고 있는 홍규석은 1739년 참하도사로 근무하였고, 이후 1749년 3월 25일에 참상도사에 임명되었다.

영조대 의금부도사의 초입사직과 과거이력사항을 통해서 참상도사는 생원, 진사 출신의 자격 요건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조대 참상도사 중에서 생원, 진사 출신은 25원이었으며, 참하도 사는 전원 생원, 진사 출신이었다. 참상도사 중 사마시를 거친 인물 중에 참하도사직을 역임한 인물들은 사마 이력을 가지고 있었다. 참하도사직을 제수받을 때는 사마시 이력이 필요하였으므로 사마시 이력이 있는 참상도사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이다.

영조대 의금부도사 관제개편 논의 과정에서 명망 있는 자제들을 임명하기를 바랐던 것이 참하도사의 사마이력의 요구로 나타났다. 참상도사는 참하도사 이력을 가지고 참상도사에 임명되거나, 다른 관직에서 참상도사에 임명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참하도사와는 구성이 달랐다. 영조대종6품의 참상도사는 참하도사를 거치고 참상도사가 된 경우이거나, 다른 참하관직에서 참상도사로 경우로 나뉜다. 그럼 점에서 참상도사는 참상도사에 제수되기 이전의 전력을 함께 고려하여서 참상도사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sup>110) 《</sup>승정원일기》 770책, 영조 9년 12월 27일 갑술.

#### 2. 관로 분석

영조대 음관 의금부도사 157원의 이후 관로를 살펴본 결과는 아래 표 15와 같다. 영조대 의금부도사의 이후 관로에서 수령직에 해당되는 관직을 제수받은 인물은 총 98명으로 총 62%에 해당하는 비율이 수령직으로 진출하였다. 이들이 진출한 수령직 분포를 살펴보면, 목사 8명, 부사 7명, 군수 19명, 현령 6명, 현감 58명으로, 총 98명이다.111) 영조대 의금부도사의 이후 관로에서 수령직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관직은 바로 현감직이며, 그 다음으로는 군수직이 차지한다.

[표 13] 영조대 의금부도사 이후 관로 수령직 분포

			수령직			
구분	牧使	府使	郡守	縣令	縣監	총합
인원	8	7	19	6	58	98

영조대 의금부도사의 이후 관로에서 수령직 분포가 가장 높았던 이유는 의금부도사직이 음관이 수령에 제수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관직 중하나였기 때문이다. 음관의 수령직 제수와 관련된 논의는 숙종대부터 있어 왔다. 숙종 21년(1695) 수령취재에 합격하였더라도 음관이 사송과 관련된 관서를 역임한 후에 수령에 의망할 수 있도록 하였다.<sup>112)</sup> 숙종 23년(1697) 李思永도 '비록 생원과 진사로서 벼슬을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三曹의 郎官·監察·義禁府都事·掌隷院 郎官을 거친 다음에 비

<sup>111) 《</sup>금오계첩》 의금부도사의 자, 과거이력사항, 출신지, 의금부도사 임명된 시점 등을 토대로 승정원일기와 실록의 기사를 검색하여 이후 관로를 분석하였 다. 의금부도사를 역임한 인물들의 최고관직을 연대기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최 고관직 분석결과가 수령직과 품계가 같은 경우에는 수령직을 최고관직으로 고 려하였다.

<sup>112) 《</sup>增補文獻備考》 권233, 〈外官總論〉조. 備局啓曰"近來官方不嚴 凡筮仕之人 歷職未久 旋除守令 此亦非慎簡之道.今後 則雖生進入仕之人 必經三曹郎官·監察·禁府都事·掌隷院郎官 然後始擬守令之望 幼學蔭官 <u>則已守令取才應講亦必歷試 監察·禁府都事·掌隷院郎廳然後許令備擬於守令 似合於歷試之意 以此</u>定式施行."

로소 수령에 의망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113)

이조 판서(吏曹判書) 심택현(沈宅賢)이 아뢰기를, "음관(蔭官)으로서 정6 품에 오르는 자는 반드시 삼조(三曹)·한성부(漢城府)·의금부(義禁府)및 사평(司評)·감찰(監察)을 거쳐야 비로소 고을 수령에 제수하는 것은 대개 그 사람이 송옥(訟獄)에 밝고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감찰과 의금부도사(都事)는 6개월로 정하고, 형조와 장례원은 12개월로 정하여 달을 채우지 못한 자는 대정할 때 계청하는 것 외에는 관례에 따라 수령 의망(擬望)에 오르지 못하였습니다."114)

위의 영조 3년(1727) 심택현의 상소는 숙종대에 생겨난 규정인 음관으로 6품에 오른 자가 삼조(三曹)·한성부(漢城府)·의금부(義禁府)및 사평(司評)·감찰(監察)을 거친 이후에 수령에 제수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준다. 그 이유는 바로 訟獄에 밝게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음관이 6품으로 승진한 이후에 사송이력을 쌓는데 있어서 기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기한 설정에 대해서는 영조 5년 이중경(李重庚)의 상소에서도 기한 설정이 필요함을 호소한다.

사간원(正言 李重庚)에서 또 아뢰기를. "蔭官은 詞訟의 직임을 겪은 뒤에 守令으로 나가도록 윤허하신 것은 뜻한 바가 있는데, 근래에 겨우 사송의 직임에 除授하자마자 곧 守令으로 遷轉되고 있으니, 이제부터 사송의 직임을 겪은 지 1考가 된 뒤에야 비로소 수령에 擬望하는 것을 정식으로 삼으소서.…"115)

위의 기사는 영조 5년(1729) 이중경이 음관의 수령직 의망 전에 사송 의 직임을 겪게 하나, 사송의 직임에 제수되자마자 수령으로 천전되는

<sup>114) 《</sup>영조실록》 권11, 영조 3년 5월 17일 임신.

<sup>115) 《</sup>영조실록》 권23, 영조 5년 7월 19일 임술.

문제를 해소하고자 1考가 지난 뒤에 수령에 의망하기를 청한다. 영조 5년 이중경의 상소로 음관이 6품으로 오른 후에 사송의 직을 거치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1고를 거치도록 하였다. 영조 3년(1727) 심택현과 영조 5년(1729) 이중경의 논의 결과가 《新補受敎輯錄》 〈守令〉조의 내용으로 규정되었다.116) 1고의 기간 설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영조 7년(1731) 음관으로서 6품으로 승진한 이후에는 의금부도사에서 6개월의기간을 채우도록 하였으며, 그렇지 않은 인물이 부득이 의망되는 경우에는 望 아래에 주를 달도록 규정하였다.117)

⑦. 음관(蔭官)은 6품으로 승진한 이후에, 사송직 【호조(戶曹), 공조(工曹), 의금부(義禁府), 오부(五部)도 같다】으로 옮기고 한 차례의 고과를 거치고 나서야 수령(守令)에 의망(擬望)한다. 【숙배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산하지 않는다.】 118)

⑤. 음관(蔭官)은 6품으로 승진한 이후에, 사송직 【續】 【호조(戶曹), 공조(工曹), 의금부(義禁府), 한성부(漢城府), 오부(五部), 평시서(平市署), 감찰(監察)】으로 옮긴다.… 119)

⑦는 《속대전》 규정으로서, 음관이 수령에 의망되기 위해서는 '사송 직'을 거쳐야 하였다. 규정된 내용에 의하면 《속대전》에는 '사송직'이 규정되어 있고, 사송직과 같은 역할을 하는 관직으로서 의금부도 동일하 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속대전》 규정을 정리한 ①《전율통보》에서 는 사송직으로서 호조, 공조, 의금부, 한성부, 오부, 평시서, 감찰이라고 규정하였다.

<sup>116) 《</sup>新補受教輯錄》 권1, 吏典 〈守令〉조. 蔭官出六後, 遷詞訟官, 必經一考後, 始擬守令望.

<sup>117) 《</sup>新補受教輯錄》 권1, 吏典 〈京官職〉 圣. 刑·戶曹·京兆·禁府·監察·隸院等郎官, 六朔前, 不得移差. 若有不得已處, 自詮曹觀勢備擬, 而望下幾朔懸註, 各別擇差, 以爲久任之地.

<sup>118) 《</sup>續大典》 吏典 〈考課〉 조. 蔭官陞六品後, 遷詞訟職 【戶工曹·禁府·五部 同.】 經一考, 始擬守令. 【未肅拜者, 勿計.】

<sup>119) 《</sup>典律通補》 吏典 〈考課〉 丞. 蔭官, 陞六後, 遷詞訟職. 【續】 戶·刑·工曹, 京兆五部, 禁府, 平市署, 監察. …

의금부도사직이 가지는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서 영조대 의금부도사의 이후 관로에서 수령직의 분포가 62%라는 수치로 높게 나타난 것이다. 역임한 최고 관직이 수령직 이외의 관직이었던 의금부도사의 비율은 38%이다. 수령직 이외의 최고관직을 제수받은 인물들 중에서 의금부도 사직을 제수받기 이전에 문과에 급제한 인물 1원과 이후 의금부도사직을 제수받은 이후에 문과에 급제한 인물은 17원이다.

17원 중 참하도사로 초입사한 이후에 문과에 급제한 인물은 洪象漢, 洪啓禧, 李廷喆, 徐命天, 鄭象仁, 李商輅, 金光默, 沈煥之으로 총 8명이다.120) 8명 중 문과에 급제하기 전 6품에 오른 사람은 이정철, 정상인, 이상로, 김광묵 4명이며, 6품에 오르기 전에 문과 급제한 인물은 홍상한, 홍계희, 서명천, 심환지 4명이 해당한다.

영조대 참하도사로 초입사한 이후, 문과 급제하기 전에 6품에 오른 인물들은 다음과 같다. 李廷喆은 영조 12년(1736)에 참하도사로 임명되었으며, 참하도사로서 조사도사, 문서도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1739년 《금오계첩》에서도 참하도사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때까지도 참하도사로서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하였다. 같은 해인 1739년 7월에 이정철은 主簿로승진하였다. 이후 1756년(영조 32)에 문과에 급제하였다. 문과에 급제한이후에 특별히 정언에 제수되었다.121)

1750년 《금오계첩》에서 확인되는 참하도사 정상인은<sup>122)</sup> 1750년 참하도사에 임명되었으며, 임명 당시 나이는 31세였다. 정상인은 이후 주부, 형조좌랑에 임명되었다. 이후 정상인은 영조 41년(1765)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문과급제 당시 나이는 46세였다. 정상인은 문과 급제한 이후 1772년 승지, 대사간에 임명되었다.

<sup>120)</sup> 영조대 음관으로 참하도사에 초입사하였으나 이후 문과에 급제한 인물 8 명은 다음과 같다. 洪象漢(1734년 《금오계첩》), 洪啓禧(1734년 《금오계첩》), 李廷喆(1739년 《금오계첩》), 徐命天(1749년 《금오계첩》), 鄭象仁(1750년 《금오계첩》), 李商輅(1755년 《금오계첩》), 金光默(1759년 《금오계첩》) 리카七月 日 ), 沈煥之(1762년 《금오계첩》)

<sup>121) 《</sup>영조실록》 권88, 영조 32년 윤9월 23일 무오. 特除李廷喆爲正言, 命勿拘解由. 廷喆入於尹蓍東之彈, 而請以改正臺望, 故上惡蓍東, 有是命.

<sup>122)</sup>禁府都事(1750)-司僕主簿(1754)-刑曹佐郎(1764)-문과급제이후-副應教(종4 품)(1770)-執義(1771)-承旨(1772.5.13)-大司諫(1772.8.17)

이상로는 1755년 9월 20일 참하도사로서 1757년 1월 1일(영조 33)에 승서하여서 1757년 2월 종6품에 주부직을 제수받았다. 이상로는 6품에 오른 이후에 1773년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관직은 승지에 이르렀다.

김광묵은 1759년 참하도사로 임명된 이후에 문서색도사, 문서도사, 출사도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이후에 1762년 별제로 6품에 오른 이후에, 공조정랑, 1763년 현감으로 임명되었다. 여러 관직을 거쳐 1767년 문과에 급제한 이후에 관직이 종2품의 이조판서에 이르렀다.

참하도사로 초입사한 인물들 중에서 6품으로 오르기 이전에 문과에 급제한 인물들은 다음과 같다. 1734년 《금오계첩》에 참상도사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 홍상한은 다음해인 1735년(영조 11)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관직이 판서에 이르렀다. 1734년에 홍상한과 함께 의금부도사로 재직하였던 홍계희는 1734년 참하도사로서 관직생활을 영위하였으며 1737년 (영조 13)문과에 급제하였고 홍상한과 마찬가지로 관직이 판서에 이르렀다.

조선후기 정조대 노론 벽파를 대표하는 문신인 심환지는 영조 38년 (1762) 참하도사로서 1763년 별형방도사로 참여하였으며, 출사도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123) 1767년에도 심환지는 참하도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영조 47년(1771) 문과에 급제하였고 이후 이조판서와 우의정을 역임하였다.

영조대 참하도사를 역임한 이후에 문과 급제한 인물들의 관로를 모두 살펴본 결과 당상관에 해당하는 관직을 역임하였다. 참하도사 중 노론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심환지의 경우를 통해 영조 6년 직제개편 논의 과 정에서 의금부도사 임명에 신중을 기하려 했던 문제의식의 중요성을 확

<sup>123)</sup> 영조 39년 친국이 행해졌을 때, 친국에 참여하여서 문서색도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승정원일기》 1214책, 영조 39년 1월 21일 기묘. 親鞫入侍時, …文書色都事洪配漢·沈載鎮, 別刑房都事沈煥之·鄭彦衡, 以次進伏訖.); 친국으로 인해서 일이 많은 상황 속에서 본부도사를 채워야하므로, 출사한 도사인심환지 등을 구전으로 구전상환을 청하는 내용에서도 심환지가 출사한 상황을 보여준다. (《승정원일기》 1221책, 영조 39년 8월 27일 신해. 具允鈺, 以義禁府言啓曰, "今此親鞫多事之時, 本府都事, 不可不備員. 出使都事沈煥之·李運喆·李光浹並令該曹即爲口傳相換, 何如?"傳曰, "允.")

인할 수 있다. 당상관에 해당하는 관직을 제수받기 위해서는 문과 급제 여부가 중요하였으며, 문과에 급제하지 않은 의금부도사의 이후 관로는 수령직으로 한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4] 초입사직이 참하도사인 인물 관로

이름	최고관직	관로
尹光迪 (윤광적)	僉知	禁府都事(1730.4.23.)-典設別提(1732.10.23)-工曹佐郎(17 33)-高靈縣監(1733)-刑曹佐郎(1743)-振威縣監(1746) -淸道郡守(1751)-僉知(1757)
柳尚晋 (류상진)	縣監	禁府都事(1744)-司饔主簿(1746)-漢城主簿(1746)-工曹佐 郎(1747)-歙谷縣令(1747)-內贍主簿(1748)-工曹正郎(174 8)-抱川縣監(1749)
沈鑐 (심유)	刑曹佐郞	禁府都事(1746.9.3)-義禁都事(1749)-刑曹佐郎(1749.9.17)
洪應辰 (홍응진)	郡守	禁府都事(1747)-司畜別提(1750)-任實縣監(1750)-敦寧主 簿(1754)-工曹正郎(1754)-沃川郡守(1755)
南泰胤 (남태윤)	縣監	禁府都事(1749)-瓦署別提(1751)-社稷令(1752)-全義縣監 (1752)
李敍中 (이서중)	星州牧使	禁府都事(1752.5.26.)-司僕主簿(1754.12.28)-陰竹縣監(17 56.1.30)-工曹正郎(1761)-旌善郡守(1761)-順興府使(1765 )-羅州牧使(1766)
金載大 (김재대)	郡守	禁府都事(1756.5.23.)-內資主簿(1758.10.18.)-刑曹佐郞(17 59)-唐津縣監(1760)-思陵令(1765)-金浦郡守(1766)
洪配漢 (홍배한)	郡守	禁府都事(1760)-掌苑別提(1766)-戶曹佐郎(1767)-平康縣 監(1768)-漢城庶尹(1773)-司宰僉正(1773)-韓山郡守(177 4)
李遠培 (이원배)	牧使	禁府都事(1762)-監察(1764)-工曹正郞(1765)- 文化縣令(1766)-載寧郡守(1768)
李益燦 (이익찬)	漢城庶尹	禁府都事(1768)-恭陵參奉(1770)-尚衣別提(1775)-新昌縣 監(1775)-工曹佐郎(1781)-漢城庶尹
李商逸 (이상일)	縣監	禁府都事(1769.3.13.)-司饔主簿(1773.6.20)-工曹佐郞(177 3)-永禧殿令(1773)-戶曹正郞(1774)-義興縣監(1775)

영조대 참하도사로 초입사한 11원의 관로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윤광적은 124) 영조 6년(1730) 참하도사로 제수된 이후에 1732년 종6품인 別提에 임명되었다. 윤광적이 참하도사에 임명된 날짜는 1730년 4월 23일이며, 이후 윤광적이 별제에 임명된 날이 1732년 10월 23일로서 현종대 규정된 30개월(2년 6개월)의 규정을 정확하게 채워서 6품인 별제로 승진한 것이다. 이후에 1733년에 현감에 임명되었는데, 현감에 임명되기이전에 사송의 이력을 가지는 관직으로는 공조좌랑직을 역임하였다.

沈鑑125)는 영조 22년(1746) 참하도사로 초입사하였다.126) 심유는 1746년 참하도사로 초입사한 이후 추국에서 담당한 업무에 따라서 형방도사, 문서색, 별형방도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심유는 1748년 《금오계첩》 금오좌목에는 참하도사로 기재되어 있으며, 1749년 5월 《금오계첩》에 참상도사로 업무하였다고 기록되었다. 《속대전》에서는 참하도사가 900일을 채운 이후에 6품으로 승진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므로, 1746년 9월 3일에 참하도사로 임명된 이후 현종대 규정에 의하면 30개월 (2년 6개월)보다 적은 900일의 기간으로 1749년 5월에 참상도사에 제수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洪應辰, 南泰胤127), 洪配漢이 참하도사로 초입사한 시점은 《속대전》 간행 이후로서 900일을 채운 뒤에 모두 別提에 임명되었다. 그들의 이후 관로를 살펴본 결과 모두 현감직을 역임하였다는 사실이다. 앞의 [표 14] 의 홍응진은 현감직을 제수받기 이전에 사송직이나 사송의 이력을 인정 받는 관직 중에서 참하도사직 이외에는 다른 관직을 역임하지 않았다.

<sup>124)</sup> 윤광적이 도사로 임명된 시기는 영조 6년(1730)으로, 윤광적은 사간 윤성교(尹誠敎)의 손자이며 수찬 윤광운(尹光運)의 육촌이었다. (《승정원일기》 705책, 영조 6년 4월 29일 정묘. 上曰, "彼都事, 誰耶?" 金尚奎曰, "尹光迪也. 故司諫尹誠敎之孫, 修撰尹光運之六寸也.")

<sup>125)</sup> 심유의 아버지 沈宅賢은 영조 5년(1729) 형조판서, 영조 6년(1730) 판윤, 영조 9년(1733) 이조판서를 역임하였다. (《영조실록》 권24, 영조 5년 11월 8일 무인; 《영조실록》권25, 영조 6년 4월 23일 경신; 《영조실록》 권34, 영조 9년 5월 12일 임진.)

<sup>126) 《</sup>승정원일기》 1008책, 영조 22년 9월 3일 병신.

<sup>127)</sup> 남태윤의 아버지 남일명은 영조대 종3품의 사간(司諫), 집의(執義)를 역임하였다. (《영조실록》 권22, 영조 5년 6월 21일 갑오; 《영조실록》 권25, 영조 6년 3월 13일 신사.)

남태윤도 1752년 현감을 임명받기 이전에 사송직(형조·장례원·한성부 낭관)이나 사송의 이력을 인정받는 관직(의금부도사, 호조·공조 낭관, 감찰등) 중에서 참하도사직만 역임하였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사송직이나 사송의 이력을 인정받는 관직으로서 의금부도사는 참상도사 뿐만 아니라그 전에 근무한 참하도사 이력도 해당했다. 홍배한은 1766년 별제로 승진한 이후에 1760년 현감에 제수되기 이전에 사송이력으로서 1767년에 호조좌랑을 역임하였다. 홍응진, 남태윤은 이전에 참하도사를 역임한 이력으로서 현감직을 제수받았으며, 홍배한은 호조좌랑을 역임한 이력으로 현감직을 제수받았다. 이를 통해 사송직이나 사송의 이력을 인정받는 관직에 있어서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李敍中, 金載大, 李商逸가 참하도사에 임명받은 시기와 종6품의 主簿로임명된 시기를 보면 김재대는 1756년 5월 23일 참하도사, 이후 주부로임명된 시기는 1758년 10월 18일로서 현종대 규정된 30개월의 기간보다는 적은 영조대 900일에 해당하는 규정을 적용하여서 승진하였다. 이서중은 홍응진, 남태윤과 같이 현감에 제수받기 이전에 이력은 참하도사였다. 김재대는 현감에 제수되기 이전에 형조좌랑직을 역임하였으며, 이상일은 현감에 제수받기 이전에 참하도사, 공조좌랑, 호조정랑을 역임하였다. 이렇듯 현감직 제수에 있어서 이서중은 참하도사만, 김재대는 참하도사, 형조좌랑의 전력을 이상일은 참하도사, 공조좌랑, 호조정랑의 전력을가지고 있었다. 이를 통해서 수령직에 제수받기 이전에 거쳐야 하는 관직에 있어서 차이는 없었음을 위의 사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 6품으로 승진한 이후에 수령직을 제수받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사송에해당하는 관직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실이며 어떠한 관직이 더 인정받는 위계는 없었다.

영조대 의금부도사에 제수되는 인물들을 보면 영조대 참하도사에는 사마시 이력을 가진 인물들, 명망 있는 자제들이 배치되도록 하였다. 참상도사 중에는 참하도사를 역임한 인물 뿐만 아니라 다른 관직을 거친 이후에 참상도사에 제수된 인물들로 이루어져서 참하도사와는 구성에 차이를 보였지만, 참상도사의 이후 관로에 있어서 수령직에 해당하는 관직으

로 진출하였다. 참상도사는 음관이 수령직을 제수받기 이전에 거쳐야하는 관직 중 한곳이었다. 참상도사는 다른 사송 이력을 가지는 관직들과 차별성 없이 의금부도사 이력을 인정받았으며, 이전에 참하도사를 역임한 이력으로도 수령직을 제수받을 수 있었다.

영조 6년 이후 의금부도사 직제개편 논의 과정에서 참상도사와 참하도 사의 자격 정비는 경술국옥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의금부도사 의 기강이 해이해졌고 당대 의금부도사에 임명되는 인물들이 자격을 갖 추지 못한 인물들이 많았으므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이었다. 영조대 의금부도사에 임명되는 인물들의 자격 요건 강화를 통해서 의금부 내부 의 체제를 정비할 수 있었으며, 영조대 의금부도사는 과거를 거치지 않 은 인물들이더라도 추국 업무 및 다양한 실무를 경험한 이후에 수령직으 로 진출할 수 있었다.

#### 맺음말

영조대 의금부도사의 직제변화와 업무, 실제 의금부도사 사례 분석을 통해서 영조대 의금부도사의 제도화 과정과 참상도사와 참하도사의 특징 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영조 6년 의금부도사 직제 개편은 이전 시기와 달리 실제 의금부 내부 시스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의도 속에서 이루어졌다. 영조 4년 戊申亂 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영조 6년 4월 14일 환관 최필웅이 궁궐 담 장을 넘어 방화 사건을 계획하였으나 시찰 중에 적발됨으로써 계획이 무 산되었다. 최필웅은 혼자 궁궐 방화 사건을 모의한 것이 아니라 남인 '박 재창', '박장운'과 함께 역모사건을 구상하였다.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親鞫(경술국옥)이 행해졌으며, 직접 궁궐 담장을 넘었던 최필웅은 4월 17일 능지처사 되었으며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다. 관련자 중 영조 4년 무신난의 핵심 인물 중 한명이었던 정사효와 친분을 맺고 있었던 박재창의 아버지 박장운이 음독자살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는 사건의 배후를 철저하게 조사하려던 국왕과 의금부의 의도를 저해하려는 행동이었다. 박장운은 나졸들의 도움을 받아 음독자살을 하였는데, 박장운의 시체를 검시한 한성부 낭청에의해서 사건이 크게 문제시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의금부도사 직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영조 6년 의금부도사 직제 개편은 불안정한 시국을 해결함과 동시에 의 금부 내부의 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된다. 그 결과 종6품의 참상도사 5원과 종9품의 참하도사 5원으로 직제개편이 이 루어졌다. 인조대 이후 《경국대전》에 참상관으로 규정된 의금부도사에 참하관이 임명되는 상황에서 《속대전》에서 경력을 혁파하고, 종6품의 참상도사와 종9품의 참하도사(참외도사)로 체제를 정비한 것이다. 참상 도사 5원 중 1원에는 무관을 차출하도록 하였는데, 이렇게 변화된 직제 는 1750년 이후 계속 유지되었다.

영조대 직제개편의 대상이 된 의금부도사는 추국의 원활한 진행을 위

한 죄인압송, 문서작성, 죄인심문, 죄인 감독, 나졸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의금부도사는 추국에서 실무를 담당함으로써 의금부에서 내려지는 판결 과정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의금부 내부 관리 감독을위한 업무 수행, 과거시험장의 감독 등 의금부의 대내외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영조대 의금부도사들의 초입사직과 과거이력, 관로 분석을 통해서 그당시 이루어졌던 직제 개편의 대상의 특징을 정리하였다. 영조대 참상도사와 참하도사의 초입사직을 분석한 결과 참상도사 참하도사 모두 참봉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 다음의 순서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였는데 참상도사는 감역이 2번째로 높게 나타난 반면에 참하도사는의금부도사가 그에 해당하였다.

영조대 참하도사는 영조 6년 직제 개편 논의 이전부터 전원 사마 이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참상도사는 대략 30%에 해당하는 인물들이 사마이력을 가지고 있었다. 참하도사는 사마시 이력을 가지고 임명되었으며 6품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속대전》(1746) 규정이 확립되기 이전에는 현종대 규정된 30개월의 규정을 준수하였으나, 1746년 이후에는 900일을 채우면 6품으로 승진할 수 있었다.

참상도사는 참하도사와 달리 구성원이 참하도사에서 참상도사로 임명된 경우와 다른 관직에서 참상도사를 제수받은 경우로 나뉜다. 전력이참하도사인 참상도사는 사마시 이력을 가지고 있었다.

영조대 의금부도사의 이후 관로를 분석한 결과 수령직에 해당하는 관직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의금부도사직이 음관이 수령직에 제수받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관서 중 하나였으므로 이후 관로에서 수령직의 비중이 높았던 것이다. 영조대 의금부도사는 《속대전》에서는 사송의 역할을 하는 관직으로서 규정하고 있으나, 이후 《전율통보》에에서는 의금부도사를 '사송직'이라고 규정하였다. 의금부도사는 추국을 통한 사법행정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의금부도사직을 통해서 학습한 사법행정의 경험이 이후 수령직을 제수받아 업무 수행을 하는 데 필수적인 자질이 되었다.

의금부도사직이 사송이력에 해당하는 관직이었지만 그들이 이후 진출한 관직이 수령직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었다. 의금부도사직을 역임한 인물들 중 이후 문과에 급제한 자들은 당상관에 해당하는 관직에 임명되었다. 이렇듯 영조대 의금부도사는 직제개편 과정을 거치면서 의금부 내부의 체제 정비를 이룰 수 있었으며, 의금부도사에 임명되는 인물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여 의금부도사의 기강을 바로 잡았다.

의금부도사 체제 정비의 의도는 크게 2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의도는 의금부 내부 시스템 정비에 있었다. 두 번째로는 의금부가 처리하는 주요 업무가 반역사건의 재판이었으므로 그 실무를 담당하는 의금부도사의 직제 개편을 통해서 앞으로의 있을 반란 사건을 엄중히 처리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려는 국왕의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실제 죄인의 형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죄인의 심문을 거치고 형신이이루어진 후 조율 과정을 거치도록 하였으나, 영조대는 조율을 거치지않고 바로 형을 확정하는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영조 초반 반란 세력을 진압하고자 하는 영조의 의도 때문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문헌

# 一. 사료

# 1. 연대기

《高麗史》,《光海君日記》,《仁祖實錄》,《肅宗實錄》,《景宗實錄》,《英祖實錄》,《正祖實錄》,《承政院日記》,《日省錄》

#### 2. 기타자료

《文科榜目》

《金吾契帖》

《推案及鞫案》

《愚伏集》

《惺所覆瓿稿》

《燃藜室記述》

《增補文獻備考》

《迂書》

《萬家譜》

《國朝人物考》

# 3. 번역서

한국역사연구회중세2분과	법전연구반,	2002	《各司受敎》, 청년사.
	······································	2001	《受敎輯錄》, 청년사.
		2003	《增補受敎輯錄》. 청년사.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2014《추안급국안: 국역본》, 전주대학교. 김영석 역주, 2016 《《金吾憲錄》역주》,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김진옥 역주, 2016 《의금부의 청헌(廳憲), 금오헌록》, 보고사. 박헌순, 남지만, 하현주, 2016 《통색촬요: 서얼 허통(許通) 기록》, 한국고전번역원.

#### 4. 법제자료

《經國大典》,《典錄通考》,《受教輯錄》,《典錄通考》,《新補受教輯錄》,《續大典》,《大典通編》,《大典會通》,《六典條例》

#### 二. 연구논저

#### 1. 단행본

이태진, 1985 《조선시대 정치사의 재조명》, 법조사.

\_\_\_\_\_\_, 2011 《조선후기 탕평정치의 재조명:《조선시대 정치사의 재조명》 후속편》, 태학사.

오갑균, 1995 《조선시대 사법제도연구》, 삼영사.

이희권, 1999 《조선후기 지방통치행정 연구》, 집문당.

이상배, 1999 《조선후기 정치와 괘서》, 국학자료원.

한국역사연구회 조선시기 사회사 연구반, 2000 《조선은 지방을 어떻게 지배했는가》, 아카넷.

이성무, 2000 《조선시대 당쟁사》 2 , 동방미디어.

임용한, 2002 《조선전기 수령제와 지방통치》, 혜안.

임민혁, 2002 《조선시대 음관연구》, 한성대학교출판부.

오영교, 2005 《조선후기 체제변동과 속대전》, 혜안.

한충희, 2006 《조선초기의 정치제도와 정치》, 계명대학교출판부.

노혜경, 2006 《조선후기 수령 행정의 실제: 황윤석의 《이재난고》를 중심으로》, 혜안.

강신항, 2007 《이재난고로 보는 조선 지식인의 생활사》, 한국학중앙연구원.

김백철, 2010 《조선후기 영조의 탕평정치: 《속대전》의 편찬과 백성의 재인식》, 태학사.

오수창, 2010 《조선시대 정치, 틀과 사람들》, 한림대학교출판부.

김우철, 2013 《조선후기 정치 사회 변동과 추국》, 경인문화사.

박현순, 2014 《조선 후기의 과거(科擧)》, 소명.

공평도시유적전시관, 2019 《(의금부)금오계첩: 공평도시유적전시관 특별 기획전》, 서울역사박물관.

#### 2. 논문

이상식, 1975 〈義禁府考〉, 《법사학연구》4.

오갑균, 1977 〈영조조 戊申亂에 관한 고찰〉, 《역사교육》21.

구완희, 1982 〈先生案을 통해 본 조선후기의 수령〉, 《복현사림》4.

임선빈, 1990 〈조선초기 수령제운영과 지방통제〉, 《청계사학》7.

남지대, 1993 〈조선초기 중앙정치제도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 문.

한상권, 1994 〈조선시대 법전 편찬의 흐름과 각종 법률서의 성격〉, 《역사와현실》13.

심재우, 1995 〈18세기 獄訟의 성격과 형정운영의 변화〉,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_\_\_\_\_\_, 1998 〈조선후기 목민서의 편찬과 수령의 형정운영〉, 서울대학 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_\_\_\_\_\_, 2020 〈조선후기 수령의 법적 지위와 형벌권 행사의 실상-《목민심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전경목, 1997 〈산송을 통해서 본 조선후기 사법제도 운용실태와 그 특징〉, 《법사학연구》18.

홍순민, 1998 〈조선 후기 법전 편찬의 추이와 정치운영의 변동〉, 서울 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김웅호, 1998 〈17세기 守令薦擧制의 보완과 그 운영〉,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경숙, 2002 〈조선후기 山訟과 사회갈등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_\_\_\_\_\_, 2005 〈18세기 능참봉 김두벽의 관직생활과 왕릉수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김성윤, 2002 〈영조대 중반의 정국과 '임오화변'〉, 《역사와 경계》43. 고수연, 2004 〈영조대 무신난 연구의 현황과 과제〉, 《호서사학》39. 이경구, 2004 〈1740년(영조 16) 이후 영조의 정치운영〉, 《역사와 현 실》 53. 김백철, 2007 〈조선후기 숙종대 《受敎輯錄》편찬과 그 성격-체재(體 裁)분석을 중심으로-〉. 《동방학지》140. . 2008 〈朝鮮後期 肅宗代 國法체계와 《典錄通考》의 편찬〉, 서 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_\_\_\_\_, 2009 〈朝鮮後期 英祖初盤 法制整備의 성격과 그 지향〉, 《한국 학》 32. 조윤선, 2006. 〈조선시대 사면(赦免), 소결(疏決)의 운영과 법제적, 정치 적 의미〉, 《조선시대사학보》38. \_\_\_\_, 2007 〈영조 6년(庚戌年) 모반 사건의 내용과 그 성격〉,《조선 시대사학보》42. \_\_\_\_\_, 2009 〈영조대 남형・혹형 폐지 과정의 실태와 欽恤策에 대한 평가〉,《조선시대사학보》48. , 2009 〈조선후기 영조 31년 乙亥獄事의 추이와 정치적 의미〉, 《한국사학보》37. \_\_\_\_\_, 2018 〈조선시대 법제 자료 번역의 현황과 과제〉, 《고전번역연 구》 9. 김우철, 2010 〈조선후기 推鞫 운영 및 結案의 변화〉,《민족문화》35. 김진옥, 2011 〈'禁推'의 성격과 특징〉, 《민족문화》 36.

. 2015 〈《금오헌록》의 자료적 가치〉. 《민족문화》45.

박현모, 2010 〈영조의 위기극복 리더십 연구: '이인좌의 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19.

조지만, 2010 〈《受敎謄錄》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51.

오수창, 2012 〈18세기 조선 정치사상과 그 전후 맥락〉, 《역사학보》 213.

김영석, 2013 〈의금부의 조직과 추국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 위논문.

\_\_\_\_\_, 2013 〈추국의 의미 변화와 분류〉, 《법사학연구》48.

김형중, 2014, 〈조선초기의 순군만호부(巡軍萬戶府)의 조직과 기능에 관한 연구〉, 《역사와 경계》90.

한지희, 2016 〈영조 초 붕당론의 변용과 탕평책의 수립〉, 《국학연구》 31.

김렬, 2017 〈조선시대 관료의 승진 실태: 6품 승진(陞六)의 기준 및 요인〉,《한국행정논집》29.

이하경, 2018a 〈추국장에서 만난 조선후기 국가: 영조와 정조 시대 《추안급국안(推案及鞫案)》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_\_\_\_\_\_, 2020 〈조선후기 '무고모역'의 정치적 의미 : 영조 시대 법규와 사례를 중심으로〉,《한국정치학회보》54.

윤진영, 2019 〈조선후기 金吾契帖의 제작관행과 신경향〉, 《조선시대사학보》91.

유승희, 2020 〈18~19세기 한성부의 사법 행정과 역할〉,《역사민속학》 58.

[부표 1] 영조대 《금오계첩》 의금부도사 명단

	1729년 義禁府圖_金吾僚員錄							
번		도사	1720世 表示的画	叫_亚口尔贝以				
호	이름	- 구.시 구분	초입사직	최고관직	기타사항			
1	宋湜(송식)	-	山陵參奉	<b>魚</b> 知	<b>参</b> 上			
	·				參下 [문과] 영조 6년(1730)			
2	尹敬龍(윤경룡)	_	永禧殿參奉	承旨	을과 2위			
3	李衡齡(이형령)	_	禮賓奉事	典簿	參上			
4	李坰(이경)	_	_	錦山郡守	參上			
5	朴瑞(박서)	_	禧陵奉事	麻田郡守	參上			
6	尹以敎(윤이교)	_	_	郡守	參上 [무과]			
7	李宗岳(이종악)	_	童蒙教官	儀賓都事	參上			
8	李敏(이민)	-	崇陵參奉	禁府都事	參下			
9	柳壽觀(유수관)	_	顯陵參奉	禁府都事	參上			
10	鄭壽淵(정수연)	-	健元陵參奉	縣監	參上			
11	李恒壽(이항수)	-	繕工監役	燕岐縣監	參上			
12	趙明世(조명세)	-	繕工假監役	歙谷縣令	參上			
13	李樟(이장)	_	章陵參奉	內贍主簿	參下			
14	趙榮保(조영보)	-	寧陵參奉	燕岐縣監	參下			
					參上			
15	李綮(이계)	_	- - 敬思殿參奉	青陽縣監	1728년 司饔主簿을			
					제수받았다.			
16	柳蓍相(유시상)	_	_	_	参下 [ 子과]			
17	鄭達先(정달선)	_	敬陵參奉	府使	參上			
18	宋必熙(송필희)	_	穆陵奉事	井邑縣監	參上			
19	李弘佐(이홍좌)	_	徽陵參奉	司蕖僉正	參上			
20	李相顯(이상현)	_	四山監役	縣監	參上			
21	鄭敾(정선)	_	_	知中樞府事	參上			
22	沈鐸(심탁)	-	參奉		參下			
			1729년 錦	衣郎契帖				
번	ما ت	도사	⇒ 6] 1] <del>2</del> ]		카리 가루			
호	이름	구분	초입사직	최고관직	기타사항			
1	宋湜(송식)	參上	山陵參奉	<b></b>	1729년			
	NW(0 7)	少上	山区少年	XX	義禁府圖_金吾僚員錄			
					1729년			
	ユサ症/ 0 ココ\	<b>☆</b> _	). 注 Bn	<i>⇒</i> ⊬	義禁府圖_金吾僚員錄			
2	尹俶龍(찬경동) 	敬龍(윤경룡)   參下   永禧属	永禧殿參奉	日	[문과] 영조 6년(1730) 을과			
					2위			
3	朴瑞(박서)	參上	禧陵奉事	<b>麻田郡守</b>	1729년義禁府圖_金吾僚員錄			
	7 T 1 MLX 1 T 17			// AH/ HH mish				

4     柳壽觀(유수관)     參上     顯陵參奉     禁府都事     会秀 31년(170 47위(乙酉 1729년義禁府區 1729년義禁府區 1729년義禁府區 31년(170 47위(乙酉 1729년義禁府區 1729년義禁府區 31년(170 47위(乙酉 1729년義禁府區 31년(170 47위))       5     趙明世(조명세)     參上     繕工假監役	西司馬) 圖_金吾僚員錄 圖_金吾僚員錄
6 李繁(이계) 參上 敬思殿參奉 靑陽縣監 1729년義禁府區	
	凱_金吾僚員錄
7   鄭敾(정선)   參上   -   知中樞府事   1729년義禁府圖	圖_金吾僚員錄
8 李弘佐(이홍좌) 參上 徽陵參奉 司導僉正 1729년義禁府圏	圖_金吾僚員錄
9李度(이도)參上永徽殿參奉沃川郡守1728년(영조 이인좌 난이 의금부도사이 난을 평정 奮武原從功	4) 3월에는 ] 일어나자 게 제수되어 한 공으로
10   沈鐸(심탁)   寥下   -   1729년義禁府圖	圖_金吾僚員錄
1731년 金吾契帖 辛亥十一月	
번   이름   도사   최고관직   기타/	사항
1 閔鎭恒(민진항) 參上 中部參奉 燕岐縣監	
2 尹光迪(윤광적) 参下 禁府都事 僉知	
3 尹勉教(윤면교) 参下 西部参奉 左尹	
4 洪禹集(홍우진) 参下 徽陵參奉 盈徳縣令	
5 朴夏興(박하흥) 參上 北部參奉 井邑縣監	
6 洪久輔(홍구보) 参下 獻陵参奉 牧使	
7 李義浹(이의협) 参上 光陵参奉 縣監 辛丑	司馬
8   趙和璧(조화벽)   参上   康陵參奉   同知	
9 李益兼(이익겸) 參上 懿陵參奉 漣川縣監	
	$\neg$
10 李挺楫(이정집) 参下 長寧陵參奉 郡守	
1733년 金吾契帖 癸丑九月 日	
	사항
1733년 金吾契帖 癸丑九月 日       번     도사     최고관직     기타/	

3	李埉(이협)	參下	順陵參奉	 牧使	
4	李道善(이도선)	多上 参上		郡守	
5	李尙文(이상문)	多上 参上	山陵參奉		
6	申致重(신치중)	多下 参下	厚陵參奉		
$\frac{3}{7}$	崔昌愈(최창유)	參下	思陵參奉	<u></u> 縣監	
8	李弼(이필)	參上	內資奉事	禁府都事	
	1 2/2 (   5)		11211	21/12 HP 1.	司僕寺主簿에
9	李羲佐(이희좌)	   參上	西部參奉	禁府都事	제수되었으나, 6품강을
9	子教佐(可의적)	多上 	四叩多半	宗的郁事	, , , , , , , , , , , , , , , , , , , ,
				***	통과하지 못해 퇴거
10	申晙(신준)	參下_	懿陵參奉	牧使	
- 27			33년 金吾契帖	癸丑十二月 日	
번	이름	도사	초입사직 초입사직	최고관직	   기타사항
호	1 12	구분	<u> </u>	기고단기	7   -     0
					己亥司馬
1	辛義立(신의립)	參上	南部參奉	副護軍	1733년 金吾契帖 癸丑九月
	, ,,,,,,,,,,,,,,,,,,,,,,,,,,,,,,,,,,,,,		,,,,,,,,,,,,,,,,,,,,,,,,,,,,,,,,,,,,,,,		
					日 1731년 金吾契帖
2	李挺楫(이정집)	參下	   長寧陵參奉	郡守	辛亥十一月,
	子延伸(气含省)			416 八	1733년 金吾契帖 癸丑九月
					1733년 金吾契帖 癸丑九月
3	李埉(이협)	參下	順陵參奉	牧使	
4	本学学(4)上月)	1 63	<b>公工用形</b> 机	717 / Tr	日
4	李道善(이도선)	參上	繕工假監役	郡守	17991 人五却此 ※ 五 4 日
5	李尙文(이상문)	參上	山陵參奉	陰城縣監	1733년 金吾契帖 癸丑九月
					日
6	申致重(신치중)	   參下	厚陵參奉 	縣監	1733년 金吾契帖 癸丑九月
	中以至(记行6)		<b>开队</b> 参午	/////	日
7	방 日 念 ( 키 키	1 🕁	田味☆末	旧女 压厂	1733년 金吾契帖 癸丑九月
7	崔昌愈(최창유)	參上	思陵參奉	縣監	Е
					1733년 金吾契帖 癸丑九月
8	申晙(신준)	參下	懿陵參奉	牧使	日
9		參下	 善繕工監役		<u></u> ⊢
	TOP RACE II III		/四二二二人	TIII (IAI) ለተብ ትራንብ	
					   同春堂 宋浚吉의 증손
10	/□去和(人人分刊)	<del>,</del> 1	◆关 〒 /田 医4 /用。		
10	宋堯和(송요화)	多上	繕工假監役	同知敦寧府	영조 39년(1763) 資憲大夫
					知中樞府事
		17	734년 金吾契帕	占 甲寅正月 日	

		- 0			
번 호	이름	도사 구분	초입사직	최고관직	기타사항
1	李道善(이도선)	參上	繕工假監役	興郡守	1733년 金吾契帖 癸丑十二月 日
2	李尙文(이상문)	參下	山陵參奉	陰城縣監	1733년 金吾契帖 癸丑九月 日, 癸丑十二月 日
3	柳澂 (류징)	參下	繕工監役	麟蹄縣監	1733년 金吾契帖 癸丑十二月 日
4	宋堯和(송요화)	參上	繕工假監役	同知	1733년 金吾契帖 癸丑十二月 日
5	金光遇(김광우)	參下	-	果川縣監	
6	李挺楫(이정집)	參下	長寧陵參奉	郡守	1731년 金吾契帖 辛亥十一月, 1733년 金吾契帖 癸丑九月 日, 1733년 金吾契帖 癸丑十二月 日
7	李埉(이협)	參下	順陵參奉	牧使	1733년 金吾契帖 癸丑九月 日, 癸丑十二月 日
8	申致重(신치중)	參上	厚陵參奉	縣監	1733년 金吾契帖 癸丑九月 日, 癸丑十二月 日
9	崔昌愈(최창유)	參上	思陵參奉	縣監	1733년 金吾契帖 癸丑九月 日, 癸丑十二月 日
10	申晙(신준)	參上	懿陵參奉	牧使	1733년 金吾契帖 癸丑九月 日, 癸丑十二月 日
		1	734년 金吾契帖	〒寅七月 日	
번 호	이름	도사 구분	초입사직	최고관직	기타사항
1	鄭得天(정득천)	參上	禮賓奉事	禁府都事	
2	權世隆(권세륭)	參上	懿陵參奉	縣監	辛卯進士
3	洪尙輔(홍상보)	參上	獻陵參奉	郡守	辛卯生員
4	李重彦(이중언)	參上		郡守	乙未進士
5	李埉 (이협)	參下	順陵參奉	牧使	1733년 金吾契帖 癸丑九月 日
6	申晙(신준)	參下	懿陵參奉	牧使	1733년 金吾契帖 癸丑九月 日
7	趙階 (조계)	參上	東部參奉	縣令	辛丑生員
8	洪象漢(홍상한)	參下	禁府都事	判書	[문과] 영조 11년(1735)

					병과 2위
9	洪啓禧 (홍계희)	參下	禁府都事	判書	[문과] 영조 13년(1737) 갑과 1위
10	金喜慶 (김희경)	參下	英陵參奉	白川郡守	
			1739년 金吾帖	己未正月 日	
번 호	이름	도사 구분	초입사직	최고관직	기타사항
1	辛最彦(신최언)	參上	歸厚別提	僉正	僉正(1739년), 副護軍(1744년) 두 관직 모두 종4품
2	徐命涵(서명함)	參上	繕工假監役	龍安縣監	
3	李德顯 (이덕현)	參上	<b>善</b> 善	密陽府使	
4	趙榮宗(조영종)	參上	禁府都事	郡守	丙午司馬
5	李廷喆(이정철)	参下	禁府都事	判校	[문과] 영조 32년(1756) 을과 1위
6	兪郁基(유욱기)	參下	順陵參奉	縣監	
7	沈鎔(심용)	參下	泰陵參奉	陝川郡守	
8	李宗遠(이종원)	参上	寧陵參奉	<b>縣監</b>	丁未司馬
9	吳命修(오명수)	參下	_	水使	의금부도사 재직 이전 문관
10	李秀得(이수득)	參下	齊陵參奉	大司諫	[문과] 영조 29년(1753) 을과 2위
		1	_ 739년 金吾契帖	: 己未五月 日	E   511
번 호	이름	도사 구분	초입사직	최고관직	기타사항
1	徐命涵(서명함)	參上	繕工假監役	龍安縣監	1739년 金吾帖 己未正月 日
2	李德顯 (이덕현)	參上	<b>善</b> 善	密陽府使	1739년 金吾帖 己未正月 日
3	李夏集(이하집)	參上	繕工假監役	軍資判官	
4	任行元(임행원)	參上	四山監役	繕工副正	
5	李廷喆(이정철)	参下	_	判校	1739년 金吾帖 己未正月 日
6	兪郁基(유욱기)	參下		縣監	1739년 金吾帖 己未正月 日   1739년 金吾帖 己未正月 日
7	吳命修(오명수)	參下	_	水使	1739년 金吾帖 己未正月 日   처음부터 문관 출신
8	金東望(김동망)	參上	貞陵參奉	佐郎	己亥司馬
9	沈師得(심사득)	參下	徽陵參奉	金浦郡守	
10	李秀得(이수득)	參下		- 	
73)	ما =		745년 金吾契帖		기리기자
번	이름	도사	초입사직	최고관직	기타사항

호		구분			
1	李尙彦(이상언)	多上	_	黄澗縣監	
2	金孝大(김효대)	多上	敦寧參奉	工曹判書	慶恩府院君 金柱臣의 손자
3	<u> </u>	多上 参上	慶基殿參奉	<u>上 1991</u> 陰竹縣監	及心的机石 亚在庄 1 亿年
4	<u> </u>	多上 参上	長陵參奉	禁府都事	
5		多工 参下	顯陵參奉	陽川縣監	(금주령을 어겨 유배)
6	金致溫(김치온)	一多 下	禧陵參奉	牧使	(요 ) 정말 기기 (1 시 기기
$\frac{6}{7}$	<u> </u>	参下	禁府都事	抱川縣監	
	7月月日(日 6 亿)	少 1	示用银书	1 67 1 1 WW mm.	[문과] 영조 30년(1754)
8	尹東暹(윤동섬)	參上	-	判書	갑과 3위
9	尹光德(윤광덕)	參下	溫陵參奉	佐郎	
10	金履福(김리복)	參下	長陵參奉	縣監	
			1748년 金吾	郎契會圖	
번	이 글	도사	ラ (c) 1 (1 フ)	키 그 키 기	기미기장
호	이름	구분	초입사직	최고관직	기타사항
1	尹得庚(윤득경)	參上	繕工假監役	禁府都事	
2	鄭睔(정곤)	參下	_	_	
3	沈鑐(심유)	參下	禁府都事	佐郎	영조 22년(1746) 9월 3일 의금부도사로 초입사
4	洪應辰(홍응진)	參下	禁府都事	郡守	영조 23년(1747) 5월 29일 의금부도사로 초입사
5	洪櫟(홍력)	參下	章陵參奉	牧使	
6	鄭復良(정복량)	參上	繕工假監役	禁府都事	
7	林養浩(임양호)	參上	繕工假監役	鎭岑縣監	
8	李命祿(이명록)	參上	繕工假監役	金溝縣令	延平府院君 李貴 후손
9	南圖逸(남도일)	參上	東部參奉	井邑縣監	
10	具善慶(구선경)	參下	齊陵參奉	任實縣監	
		1	749년 金吾契帖	己丑五月 日	
번 호	이름	도사 구분	초입사직	최고관직	기타사항
1	林養浩(임양호)	參上	繕工假監役	鎭岑縣監	1748년 金吾郞契會圖
2	金百鍊(김백련)	参上	昌陵參奉	果川縣監	2.22
3	沈鑐(심유)	多上	禁府都事	佐郎	1748년 金吾郞契會圖
4	洪應辰(홍응진)	参下	禁府都事	郡守	1748년 金吾郎契會圖
5	具善慶(구선경)	参下	齊陵參奉	任實縣監	1748년 金吾郞契會圖
6	洪龜錫(홍규석)	参上	顯陵參奉	木川縣監	
7	李命興(이명흥)	参上	徽陵參奉	縣監	乙卯司馬
8	徐命天(서명천)	參下	禁府都事	承旨	[문과] 영조 27년(1751) 을과 3위
9	南泰胤(남태윤)	參下	禁府都事	縣監	2 1 0 11

10	閔漸洙(민점수)	參下	貞陵參奉	禁府都事	
		1	750년 金吾座目	庚午四月 日	
번 호	이른	도사 구분	초입사직	최고관직	기타사항
1	 蔡膺一(채응일)	多上	   寧陵參奉	 縣監	
2	具善慶(구선경)	參下	齊陵參奉	佐郎	1749년 金吾契帖 己丑五月
3	南泰胤(남태윤)	參下	禁府都事	縣監	1749년 金吾契帖 己丑五月
4	金鳴魯(김명로)	參上	繕工假監役	南原府使	
5	宋載和(송재화)	參上	明陵參奉	縣監	
6	鄭象仁(정상인)	參下	禁府都事	任琨縣監	[문과] 영조 41년(1765) 병과 2위
7	李廸坤(이적곤)	參上	四山監役	陰城縣監	
8	任琨(임곤)	參下	中部奉事	靑陽縣監	
9	閔原 (민원)	參上	-	_	乙卯武科
10	南肅寬(남숙관)	參下	穆陵參奉	縣監	
		1	753년 金吾契帖	; 癸酉八月 日	
번 호	이름	도사 구분	초입사직	최고관직	기타사항
1	李厚遠(이후원)	經歷	厚陵參奉	石城縣監	
2	洪旰(홍간)	經歷	_	_	辛酉武科
3	尹光烈(윤광렬)	經歷	長寧殿參奉	高城郡守	
4	趙載福(조재복)	經歷	敦寧參奉	玄風縣監	
5	申大孫(신대손)	經歷	敬陵參奉	星州牧使	
6	李敍中(이서중)	都事	禁府都事	星州牧使	
7	洪述海(홍술해)	都事	明陵參奉	觀察使	[문과] 영조 35년(1759) 병과 1위 역모를 꾀하다가 주살되었으며, 명단에 이름의 일부 가려져 있음.
8	洪益喆(홍익철)	都事	敦寧參奉	府使	
9	李復天(이복천)	都事	章陵參奉	縣監	
10	權正雄(권정웅)	都事	童蒙教官	縣令	
		_1	755년 金吾契帖	: 乙亥十月 日	
번 호	이름	도사 구분	초입사직	최고관직	기타사항

1	金選慶(김선경)	參上	慶基殿參奉	戶曹參議	
2	洪有徵(홍유정)	參上	長陵參奉	陽智縣監	癸巳司馬
	L. L. L. ( 2 . 2 2		Total Control Control		[문과] 영조 49년(1773)
3	李商輅(이상로)	參下	禁府都事	承旨	을과 2위
					[문과] 영조 35년(1759)
4	金相翊(김상익)	參下	惠陵參奉	副學	
	11.77 (44. ( . ) . 7 )		prest to Contra	I for a large and	을과
5	安取範(안취범)	參上	順陵參奉	衿川縣監	己酉司馬
6	金履復(김리복)	參下	文書都事	郡守	
7	李挺梅(이정매)	參下	泰陵參奉	都事	
8	李錫奎(이석규)	參上	光陵參奉	丹城縣監	庚申司馬
9	成德求(성덕구)	參下	翼陵參奉	縣監	
10	李基恢(이기회)	- 參上	_	_	乙卯武科
-3			756년 金吾契帕	片 丙子八月 日	
번	이름	도사		최고관직	기타사항
호	1 0	구분	工 日 7 7 7	의 프 한 기	719718
1	金載大(김재대)	參下	禁府都事	郡守	
	* * * + + ( . ]	4 T	** + + + - + - + - + - + - + - + - + - +	7 14	1755년 金吾契帖 乙亥十月
2	李商輅(이상로)	參下	禁府都事	承旨	日
					1755년 金吾契帖 乙亥十月
3	金履復(김리복)	參下	文書都事	郡守	
4	本毎田(み) プスし	參下	(中二)体 众 末	旧衣 匠仁	В
4	李慶甲(이경갑)	多下	健元陵參奉	縣監	[Pall 64 z 4014/1772)
5	趙載翰(조재한)	參上	 	司諫院大司諫	[문과] 영조 49년(1773)
					을과 3위
6	尹得宣(윤득선)	參上	徽陵參奉	縣監	丁卯司馬
7	李廷恢(이정회)	參上	靖陵參奉	金浦郡守	
8	柳煒(류위)	參上	長陵參奉	縣監	庚午司馬
9	李彦忠(이언충)	參下	萬寧殿參奉	縣監	
10	金胃澖(김위한)	參上	_	_	辛亥武科
		1759	9년 金吾契帖 최	落帙 己卯七月 日	3
번	A) =	도사	ラのいりつ	키 그 기 기	기만 기둥
호	이름	구분	초입사직	최고관직	기타사항
1	崔台鎭(최태진)	參上	貞陵參奉	扶餘縣監	
2	李命杰(이명걸)	多上 参上	參奉	善山府使	
3	鄭昭儉(정소검)	多下	光陵參奉	郡守	
4		参下	英陵參奉	稷山縣監	
5		参上	- 人区多午	- //yp	辛未武科
6	사誠一(박성일)	多上 参上	齊陵參奉	金吾都事	<b>上</b> 東午司馬
7	李章祜(이장호)	多上 参上	副奉事	府使	甲子司馬
-	1 十四(10年)		四10十. 4.	/13 12	[문과] 영조 43년(1767)
8	金光默(김광묵)	參下	禁府都事	吏曹參判	
					갑과 1위

9	趙德成(조덕성)	參下	康陵參奉	大司憲	[문과] 영조 39년(1763) 갑과 1위			
10	李翔(이상)	參下	_	_				
	1759년 金吾座目 幷 英宗己卯(己卯十二月 日)							
번 호	이름	도사 구분	초입사직	최고관직	기타사항			
1	朴誠一(박성일)	參上	齊陵參奉	金吾都事	庚午司馬 1759년 金吾契帖 落帙 己卯七月 日			
2	金光默(김광묵)	參下	禁府都事	吏曹參判	1759년 金吾契帖 落帙 己卯七月 日			
3	趙德成(조덕성)	參下	康陵參奉	大司憲	1759년 金吾契帖 落帙 己卯七月 日			
4	李翔(이상)	參下	_	-	1759년 金吾契帖 落帙 己卯七月 日			
5	趙載述(조재술)	參下	溫陵參奉	高陽郡守				
6	李永培(이영배)	參上	長靈殿參奉	黄州牧使				
7	李思國(이사국)	參上	守奉官	衿川縣監				
8	柳雲(류운)	參上	_	_				
9	李宅源(이택원)	參下	禮賓奉事	禮安縣監				
10	具大勳(구대훈)	參上	_	_	辛未武科			
			62년 金吾契帖	壬午十一月 日				
번 호	이름	도사 구분	초입사직	최고관직	기타사항			
1	權瓛(권환)	參上	守奉官	活人別提				
2	洪配漢(홍배한)	參下	禁府都事	韓山郡守				
3	李趾光(이지광)	參上	內資寺奉事	判官				
4	金思重(김사중)	參下	惠陵參奉	縣監				
5	李遠培(이원배)	參下	禁府都事	牧使				
6	韓厚增(한후증)	參上	宣陵參奉	振威縣令				
7	沈載鎭(심재진)	參下	弘陵參奉	縣監				
8	鄭彦衡(정언형)	參上	-	_	乙亥武科			
9	沈煥之(심환지)	參下	禁府都事	領議政	[문과] 영조 47년(1771) 병과 4위			
10	金載岳(김재악)	參上	宣陵參奉	高陽郡守				
		1	769년 金吾座目	己丑九月 日				
번 호	이름	도사 구분	초입사직	최고관직	기타사항			
1	李灌(이관)	參上	穆陵參奉	連山縣監				

		T	ı	1	
	N. 16 1 ( -2 -2 -2 )	a	tata da los de	領議政	1762년 金吾契帖
2	沈煥之(심환지)	參下	禁府都事		壬午十一月 日
3	 金斗衡(김두형)	<b>参</b> 上	假監役	任實縣監	
4	<u>- 사</u> 恒源(박항원)	多上 参上	守奉官	丹城縣監	國舅 朴應福 後孫
4	和温你(当るせ)	少 上	7 学 日	/ / / / / / / / / / / / / / / / / / /	[문과] 영조 49년(1773)
5	李勉修(이면수)	參下	禁府都事	右承旨	
					을과 5위
6	李益燦(이익찬)	參下	禁府都事	新昌縣監	
7	洪鳳漢(홍봉한)	參下	參奉	領中樞府事	[문과]
8	李商逸(이상일)	參下	禁府都事	義興縣監	
9	嚴思敏(엄사민)	參上	惠陵參奉	縣監	壬午司馬
10	趙毅鎭(조의진)	參上	_	_	癸未武科
		1	769년 金吾契帖	占 乙丑十月 日	
번	.1 =	도사	5. Al 11 -1	-11 -1	_1 _1 _1
호	이름	구분	초입사직	최고관직	기타사항
		, =			1769년 金吾座目 己丑九月
1	李灌(이관)	參上	穆陵參奉	連山縣監	
					17001 人五初此
					1762년 金吾契帖
	<b>火ルな エ / パラコー</b>	<b>*</b> T	** **	人工 辛安 工厂	壬午十一月 日
2	沈煥之(심환지)	參下	禁府都事	領議政	1769년 金吾座目 己丑九月
					H
3	李勉修(이면수)	參下	   禁府都事	右承旨	1769년 金吾座目 己丑九月
	于旭岭(「七丁)		75/11/BP-7	/D/ <del>J</del> Y D	日
	I		I.I., In Ima		1769년 金吾座目 己丑九月
4	李益燦(이익찬)	參下	禁府都事	新昌縣監	В
					1769년 金吾座目 己丑九月
5	洪鳳漢(홍봉한)	參下	參奉	領中樞府事	
					H
6	李商逸(이상일)	参下	禁府都事	義興縣監	1769년 金吾座目 己丑九月
0	子间地(一百百万		示川和事	我妈你面	日
7	李得源(이득원)	參上	守奉官	青山縣監	
8	柳鎭茂(류진무)	參上	_	_	己丑武科
					壬午司馬,
9	嚴思敏(엄사민)	   參上	   惠陵參奉	<b>縣</b> 監	   1769년 金吾座目 己丑九月
9		少上	芯阪多半	<b>冰水 </b>	
					日
10	会 (1 海 / フ) ビ お (			<b>打磨</b> 眼卧	1769년 金吾座目 己丑九月
10	金斗衡(김두형)	參上	假監役	任實縣監	В
			l .	L	

- \* 1729년 《義禁府圖\_金吾僚員錄》은 영조대 다른 《金吾契帖》과 달리, 참상·참하도 사의 구분 없이 기록되어 있음. 《朝鮮王朝實錄》 임명기사를 토대로 의금부도사로 임명되었을 당시 도사를 구분하여 기타사항에 작성함.
- \* 《金吾契帖》 명단 번호의 순서는 《金吾契帖》에 기록되어 있는 순서대로 가장 먼저 임명된 都事부터 작성하였음.
- \* 기타사항에는 司馬이력(참상도사의 경우 사마 요건이 필수가 아니었으므로 사마이력을 지닌 참상도사를 기재함), 文科 급제 여부와 이전 《金吾契帖》에 명단이 기록되어 있을 시 앞서 기재되어 있는 《金吾契帖》, 특이사항 등에 대해서 정리함.
- \*한국역대인물종합시스템(http://people.aks.ac.kr/index.aks), 《朝鮮王朝實錄》,《承政院日記》임명기사를 참고하여 초입사직과 최고관직, 기타사항 내용을 분석함.
- \* 최고관직의 경우, 최고관직을 역임한 관직의 품계가 같을 경우 수령직에 해당하는 관직을 기재함.

#### [Abstract]

# The Organization and Composition of Uigeumbu Dosa(義禁府都事) during the reign of King Young-jo(英祖)

HAN Bada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article investigates causes of the change in position related to Uigeumbu Dosa(義禁府都事) during the reign of King Young-jo(英祖), changes before and after the reign of King Young-jo, the role and actual appointment cases of Uigeumbu Dosa to find out the changes of Uigeumbu Dosa.

As working-level staff, Uigeumbu dosa was one of the public posts that Eumguan(蔭官) had to go through in order to receive the Prefect(Su'ryeong, 守令) position while performing various duties within Uigeumbu. Uigeumbu Dosa was in charge of Chuguk(推鞫;

interrogation) and transporting criminals and prepared the basis for the judgment of criminals. Especially during the reign of king voung-io. Gyeongneok(經歷) which was prescribed in Gyeongguk-daejeon(經國大典) was abolished and unified into the Dosa(都事) position. In addition to the unification of the name, there was also a change in the official rank. The composition of ten Gyeongneok and Dosa, as defined in the Gyeongguk-daejeon, had changed since then. According to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and Geumo Gyecheop(金吾契帖), it consisted of 5 people for Gyeongneok and 5 people for Dosa. In the 29th year (1703) of King Suk-jong(肅宗)'s reign, three out of five Dosa went up to Gyeongneok, resulting in a total of eight becoming Gyeongneok and two becoming Dosa. This composition continued to be maintained, And the six-year reorganization of King Young-jo took place.

The background of the change in official rank is as follows: Not long after the military official rebellion(戊申亂) which occurred in the fourth year of King young-jo's reign, eunuch Choi Pilwoong(崔必雄) planned an arson in the sixth year of King young-jo. But, the plan fell through as it was caught during the inspection. There was a Gyeongsul Gukok(庚戌鞫獄) about Choi Pil-woong and participants, but Park Jang-woon(朴長運), the South man who plotted a palace arson incident with Choi Pil-woong, committed suicide by poison during the investigation. This behavior was intended to the king and Uigeumbu's intention to undermine thoroughly investigate the background of the incident.

This incident led to discussions on the reorganization of the position of Uigeumbu Dosa. As a result, Gyeongneok(經歷) position was abolished in Sokdaejeon(續大典) and reorganized the system with 5 people for Chamsangdosa(參上都事) and 5 people for Chamhadosa

(參下都事). Among 5 people of Chamsangdosa(參上都事), one was assigned to the military officer(武官).

Before the reorganization, All Chamhadosa had a history of passing the test Sama(司馬), and about 30% of the Chamsangdosa had a sama history. So, Chamsangdosa who was Chamhadosa before had the history of passing the test Sama.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Uigeumbu Dosa's later path, the Prefect(守令) position accounted for the largest portion. Since Uigeumbu Dosa was one of the government offices that Eumguan(蔭官) had to go through in order to get the prefect position, the portion of the receiving prefect was high.

The intentions of reforming Uigeumbu Dosa system can be summarized in two ways. The first intention was to overhaul the internal system of Uigeumbu. Secondly, it seems that the king young-jo's intention was to show his willingness to deal sternly with the future insurgency through the reorganization of Uigeumbu Dosa system which was the central criminal court of the Joseon era. In order for criminals to be confirmed, it was required to go through the interrogation and the mediation process after Hyungshin(刑訊). But, there were some cases in which King Young-jo immediately confirmed the sentence without coordination. This shows King Young-jo's intention to suppress the insurgents at the beginning of King Young-jo reign.

keywords: Young-jo(英祖), Uigeumbu Dosa(義禁府都事), Gyeongneok (經歷), Gyeongsul Gukok(庚戌鞫獄), Chuguk(推鞫; interrogation). Prefect(守令; Su'ryeong)

Student Number: 2018-20779